

# 南北韓 議會制度에 관한 法制分析

2000. 10

研究者：具秉會 [派遣研究員]  
[國會立法調查官]

**한국법제연구원**

# 목 차

제 1 장 서 론 .....	5
제 2 장 남·북한 의회의 성립과 변천 .....	7
제 1 절 국회의 성립과 변천 .....	7
1. 제헌국회의 성립 .....	7
2. 각 대별국회의 변천 .....	10
3. 헌법상 국회의 권한·기능의 변천 .....	31
제 2 절 최고인민회의의 성립과 변천 .....	80
1. 최고인민회의의 성립 .....	80
2. 각 기별 최고인민회의의 활동과 변화 .....	83
3. 헌법상 최고인민회의의 권한·기능변천 .....	102
제 3 장 남·북한 의회제도 비교·분석 .....	119
제 1 절 국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성격 .....	119
제 2 절 국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선거과정 .....	122
1. 선거의 기본원칙 .....	122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 .....	122
3.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박탈 .....	123
4. 선거구 .....	123
5. 의원정수 .....	124
6. 선거관리위원회 .....	124
7. 후보자 추천 .....	124
8. 선거운동 .....	125
9. 선거에 관한 경비 .....	125
10. 투표방법 .....	125

11. 당선자의 확정 .....	126
12. 재선거와 보궐선거 .....	126
13. 선거소송 .....	127
제 3 절 국회의원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	127
제 4 절 국회와 최고인민회의 권한·기능 .....	129
1. 입법에 관한 권한 .....	129
2. 재정에 관한 권한 .....	130
3. 국가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	130
4.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131
5. 자율권 .....	131
6. 기타 최고인민회의 권한·기능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격 .....	132
제 5 절 국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 제도 .....	133
제 4 장 결론 : 남북관계의 전망과 의회의 역할 .....	135
참고문헌 .....	140
표·그림 목차	
〈표 1〉 헌법상 국회의 권한·기능 변천표 .....	34
〈표 2〉 북한의 헌법상 국가기관의 성격 .....	101
〈표 3〉 헌법상 최고인민회의의 권한·기능 변천표 .....	106
〈그림 1〉 북한의 국가기관 체계도 .....	121

## 제 1 장 서 론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은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간 공로를 이용,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①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 ②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③올해 8·15에 즈음하여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 ④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구축, ⑤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 ⑥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남북공동선언」을 도출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내용 면에 있어서는 과거의 「7·4 남북공동성명」(1972.7.4)이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2.19)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서도 「6·15 남북공동선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실천적 측면 때문이다. 「6·15 남북공동선언」과 관련하여 이미 이행되었거나 진행중인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1차 장관급회담(2000.7.29-31, 남측대표 : 박재규 통일부장관, 북측대표: 전금진 내각책임참사)에서는 관문점 연락사무소 업무재개,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 연결 등에 합의하였고, 평양에서 재개된 2차 장관급 회담(2000.8.29-9.1)에서는 이산가족 교환사업을 올해 안에 두 차례 더 실시, 쌍방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경제협력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 제도적 장치마련, 서울-신의주 철도 연결 및 문산-개성 도로개설, 임진강 수해방지 공동사업, 백두산·한라산 관광단 교환 등에 합의하였다.

한편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을 방문한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는 임동원 대통령특보와 이산가족 연내 생사확인,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연중 서울 방문, 차관급 경제실무 접촉, 경의선 9월중 기공식, 임진강 공동수방사업, 북측 경제시찰단 10월 방문 등을 합의하였다.

남북간에 있었던 이상의 합의내용에 따라,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은 8월 1차(8.15-18)에 이어 11월 과 12월중 각각 한차례씩 더 있을 예정이며, 지난 9월 2일에는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판문점을 통하여 북측에 송환되었고, 9월 22일에는 조총련계 인사의 고향방문, 9월 24일에는 국방회담을 위한 인민무력성부장 김일철 일행과, 경험실무접촉을 위한 무역성 지도국장 정운업 일행이 서울에 도착했다.

이와 같이 과거 어느 때 보다는 남·북한은 역동적인 접촉을 하고 있으며, 이는 내년 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을 계기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북한체제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로 본고에서는 체제의 핵심인 남·북한의 의회제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남·북한 의회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남·북한 의회제도의 성격, 충원과정, 권한·기능 등을 비교 분석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통일방안으로 제기된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대한 전망과 남·북의회간 협조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 제 2 장 남·북한 의회의 성립과 변천

### 제 1 절 국회의 성립과 변천

#### 1. 제헌국회의 성립

1945년 일본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서 한국은 36년간의 일본제국주의의 학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국내외에서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힘이 아닌 외세에 의한 해방은 분단과 반목이라는 또 다른 비극을 초래했다.

1945년 8월 8일 소련은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8월 9일부터 만주와 한반도로 진격하여 8월 24일에는 평양에 입성하였다.<sup>1)</sup>

한편 미국은 1945년 9월 2일 공중 살포된 주한미군사령관 하지(John R. Hodge) 중장의 포고문 및 9월 8일 서울에 진주하면서 공포한 맥아더(D. MacArthur)사령관의 포고문을 통하여, 남한에서 군정을 실시함을 천명했다. 뒤이어 9월 12일에는 아놀드(Archibald V. Arnold) 소장을 군정장관으로 임명하고, 9월 18일에는 미군장교들을 각 국장으로 임명하여 본격적인 미군정이 시작되었다. 초기 미군정은 점령군적인 성격을 가졌으나, 한국인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운영으로 미군정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이를 해소하고 한국인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1946년 8월 미군정청은 남조선과도정부 입법위원의 설치령을 공포하고, 민선의원(45명)과 관선의원(45명)으로 구성된 입법위원을 설치하여 미군정이 남한에 존속하는 동안 사회개혁의 기초가 될 법률의 초안을 작성하여 군정장관에게 제출케 하였다. 또한 1947년 2월에는 행정의 최고책임자를 민정장관으로 하고 안재홍을 임명하였으며, 1947년 6월에는 미군정을 남조선과도정부로 개칭하고, 기구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기구화를 시도하였다.<sup>2)</sup>

1) 통일교육원, 「북한문제이해」, (통일교육원, 1999), p.22.

2) 진덕규, “미군정의 정치사적 인식”, 송건호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91), pp.41-46.

한반도에 있어 미·소의 초기점령정책에 따른 분단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1945년 12월 미·영·소 3국의 외상이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가진 결과 미·영·소·중이 시정권자가 되고 탁치기간 5년의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미·소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 1946년 3월과 1947년 5월 두 차례의 회의가 있었으나 공동위원회와 협의할 민주적 정당 및 사회단체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로 결렬되고 말았다.

이에 정부간 교섭을 위하여 미국무장관대리 로베트(Robert A. Lovett)는 1947년 8월 29일 와싱턴에서 4대국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소련이 거부함에 따라 미국은 9월 17일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였다.<sup>3)</sup>

유엔총회는 1947년 11월 14일 유엔의 감시하에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여 제헌의회를 구성하고, 미·소의 철군문제를 협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1948년 1월 8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서울에 들어 왔다. 그러나 북한주둔 소련군사령관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방북을 거절함에 따라 위원단의 활동은 북한지역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위원단은 이 문제를 유엔소총회에 보고하고, 유엔소총회는 1948년 2월 26일 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위원단이 유엔의 결의를 실행하도록 결의함에 따라 잠정적인 국회의원선거법(1948.3.17. 미군정 법령 제175호)을 만들어 남한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sup>4)</sup>

한편,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해온 김구와 김규식은 북한 공산지도자들에게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제반 조치를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한 정치지도자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고, 김일성과 김두봉이 이 제의를 받아들여 1948년 4월에 남북대표자 연석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이 회의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이미 다 짜여진 사안에 남한대표들은 손님격으로 참석한 것이 되어 연석회의로서 성격을 상실하고, 결국 북한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전 조선인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선전에 이용됐을 뿐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3) 김학준, “분단의 배경과 고정화 과정”, 송건호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91), p.89.

4) 대한민국국회, 『대한민국국회50년사』, (대한민국국회, 1998), pp.104-105.

남로당과 좌익단체의 총선거 저지 공세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북한지역 대표로 배정된 100석을 제외한, 2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이 선거에는 48개 정당·단체와 총후보자(948명)의 44%에 해당하는 417명의 무소속후보자가 참가하였다. 선거결과는 무소속 85명,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명, 한국민주당 29명, 대동청년단 12명, 조선민족청년단 6명, 기타 13개 군소정당 및 단체에서 각 1명씩 당선되었다.<sup>5)</sup>

역사적인 제헌국회의 소집과 회의 준칙을 마련하기 위하여 1948년 5월 21일 신익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소집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 위원회의 활동으로 5월 27일 국회의원 예비회의가 소집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국회소집일자를 5월 31일로 정하고 국회법이 제정될 때까지 적용할 국회 운영에 관한 규칙 입안을 준비위원회에 위임하였다.

국회의원 예비회의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소집되었다. 국회는 오전에 국회준칙에관한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의장단(의장 이승만, 부의장 신익희·김동원)을 선출·구성하였으며, 오후에 개원식을 거행하였다. 뒤이어 1948년 6월 10일에는 국회법을 제정하고 6월 18일에는 전원위원장 및 9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원 구성을 마무리하였다.<sup>6)</sup>

한편 정부 구성을 위하여 국회는 1948년 7월 12일 헌법을 제정하고,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됨에 따라, 헌법절차에 의하여 7월 20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8월 2일에는 이범석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 8월 5일에는 김병노 대법원장임명승인요청을 동의함으로써 1948년 8월 15일 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

제헌국회는 임기 2년의 단원제 국회였다.<sup>7)</sup> 국회는 입법권(제정헌법 제 31조), 예산심의결정권(동헌법 제41조), 조약체결·비준과 선전포고 동의권(동헌법 제42조), 국정감사권(동헌법 제43조), 의원의 자격심사·징계 및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자율권(동헌법 제45조), 탄핵소추·탄핵결정권

5) 국회의원총람발간위원회, 「대한민국의정총람」, (헌정요람편찬회, 1994), pp.453-455.

6) 제정국회법 제15조에는 8개의 상임위원회가 명시되어 있으나 자격징계위원회를 자격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였다(「대한민국국회50년사」, p.106.).

7) 제정헌법 제33조에는 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을 규정한 제 102조에서 제헌국회 의원의 임기는 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하였다.



(동헌법 제46조) 등이 있었으며, 국회의원은 법률안제출권(동헌법 제39조), 불체포특권(동헌법 제49조), 면책특권(동헌법 제50조)등이 있었다.

제헌국회의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20인), 외무국방위원회(30인), 내무치안위원회(20인), 재정경제위원회(40인), 산업위원회(40인), 문교사회위원회(20인), 교통체신위원회(20인), 징계자격위원회(20인)로 정하고 위원회와 위원 정수는 국회의 의결로 증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1948.10.2. 제정 국회법 제16조). 또한 특별한 안건을 부탁(付託)하기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를 두었다(동법 제15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에 의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제헌국회는, 헌법 등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과거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예산안심사와 국정감사등 대행정부 견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의회의 모습을 갖추어 갔다.

제헌국회는 회기 중 법률안 234건을 포함한 총 5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365건이 가결되고, 84건이 부결·폐기 등 처리되었으며, 63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sup>8)</sup>

## 2. 각 대별국회의 변천

### (1) 제2대국회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의하여 1950년 5월 30일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는 이전 제헌의원 선거당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여 불참했던 민족주의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선거결과 의원정수 210명중 무소속 당선자가 1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한국민당 24명, 민주국민당 24명, 국민회 14명, 대한청년단 10명, 일민구락부 3명, 대한노동총연맹 3명, 사회당 2명, 대한여자국민당 1명, 대한부인회 1명, 중앙불교위원회 1

---

8)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 (국회사무처, 2000), p.496.

명, 민족자주연맹 1명이 각각 당선되었다.<sup>9)</sup>

1950년 6월 19일 첫 집회를 연 제2대국회는 의장단(의장 신익희, 부의장 장택상·조봉암, 후반기는 의장 신익희, 부의장 조봉암·윤치영)을 구성한 다음, 개원식을 가졌다(전원위원장 및 8개 상임위원장 선출은 1950년 7월 30일에 실시되었음).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을 감행함에 따라 우려했던 미·소의 분단점령정책의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났다. 무방비 상태의 한국군은 북한군의 상대가 되지 못하여 26일에는 의정부가 함락되고, 28일에는 서울이 함락되었다.

전세를 파악하지 못했던 국회는 6월 27일 회의를 열고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을 출석시켜 사태의 진상 및 대책을 추궁하고 미국대통령 및 의회에 대하여 긴급원조를 요청하는 메시지 발송과 수도사수(首都死守)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행정부는 국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남하를 서둘렀고 이후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국회는 전세에 따라 대전, 대구, 부산 등지로 의사당을 옮기면서 전시에 필요로 하는 입법활동과 민심수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sup>10)</sup>

한편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세력이 다수석을 차지함에 따라, 국회에서 재선을 기대할 수 없게된 이승만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위하여 정·부통령 직선제 및 양원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1951년 11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개헌안을 1952년 1월 18일 표결결과 부결되었다.

또한 야당도 유리해진 국회의석분포를 이용하여 숙원이었던 의원내각제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1952년 4월 17일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정부·여당이 이미 부결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1952년 5월 14일 다시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국회의원들을 폭력으로 위협하고 연금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9) 「대한민국의정총람」, pp.465-466.

10) 「대한민국국회50년사」, p.148.

결국 정부·여당의 대통령직선제 및 양원제 국회안과 야당의 국무원불신 임제를 함께 채택한 이른바 발취(拔萃)개헌안이 1952년 7월 4일 독회절차 없이 기립투표의 방식으로 국회에서 강제로 통과되면서 세칭 부산정치 파동은 일단락 되었다.<sup>11)</sup>

이 헌법개정으로 1952년 8월 5일 실시된 정·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과 함태영이 당선되었다.

전쟁으로 파란만장했던 제2대국회 중 제출된 안건은 법률안 398건을 포함하여 모두 1,183건이었다. 그중 861건이 가결되고, 218건이 부결·폐기등 처리되었으며 104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sup>12)</sup>

## (2) 제3대국회

1954년 5월 20일 제3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1952년 7월 7일 개정헌법에 따라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을 구성해야 했으나 참의원 선거에 필요한 입법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민의원 의원만 선거하였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입후보자 공천제가 실시되었다. 여당인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3선을 위한 개헌을 목표로 203개 선거구에 247명을 공천하였고, 야당인 민주국민당은 77개 선거구에 공천후보자를 내세웠다. 전국 도처의 선거구에서 공공연히 야당후보자들에 대한 선거 방해와 탄압이 자행된 속에서 치루어 진 선거결과는 자유당 114명, 무소속 68명, 민주국민당 15명, 국민회 3명, 대한국민당 3명이 각각 당선되어<sup>13)</sup> 여당은 과반수 의석 확보에 성공하였다.

1954년 6월 9일 개원한 국회는 의장단(의장 이기붕, 부의장 최순주·곽상훈. 후반기는 의장 이기붕, 부의장 조경규·황성수)을 구성하고, 6월 23일에는 전원위원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여 전원위원장 및 13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자유당이 차지하였다.<sup>14)</sup>

11) 『대한민국국회50년사』, pp.155-156.

12) 『의정자료집』, p.497.

13) 『대한민국의정총람』, pp.479-480.

14) 13개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 내무, 외무, 국방, 예산결산, 재정경제, 농림, 상공, 문교, 사회보건, 교통체신, 징계자격, 국회운영위원회이다(『대한민국국회50년사』, p.200.).

원 구성을 끝낸 여당은 본래의 목적인 이승만 대통령의 3선을 위한 작업에 돌입하였다. 1954년 9월 6일 이기붕의원의 135명은 현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철폐, 주권제약 또는 영토변경시 국민투표제 도입, 국무총리제 폐지 및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채택,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의 지위승계제도, 헌법개정의 국민발안제 및 한계조항 신설, 군법회의의 헌법적 근거명시, 자유경쟁체제의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1954년 11월 27일 실시된 이 개헌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는 총 투표수 202표 중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로 1표가 부족하여 부결되고 말았다.

그러나 다음날 긴급 소집된 자유당 의원총회에서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 이 되므로 4사5입을 하면 개헌안을 통과된 것이라 결론 짓고, 다시 국회를 열어 전날의 부결을 취소하고 가결을 선포하였다.<sup>15)</sup>

이는 제1차 헌법개정(발췌개헌)에서 생성된 불법관행의 연장으로 수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언제나 하나의 정수로 보는 기초적인 법원리를 무시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개헌이었다.

제2차 개헌으로 중임제한이 없어진 이승만 대통령은 1956년 5월 15일 제3대 정·부통령선거에서 대통령(부통령은 민주당의 장면)으로 당선되었고,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선거에서도 대통령(부통령은 자유당의 이기붕)으로 당선되었으나 자유당의 독재 및 불법통치는 결국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제3대국회 중 제출된 의안은 법률안 410건을 포함하여 총 1,206건이었고, 그중 752건이 가결되고, 161건이 부결·폐기 등 처리되었으며, 293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sup>16)</sup>

### (3) 제4대국회

1958년 5월 2일 제4대 국회(민의원)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233개 선거구에 841명이 입후보한 이 선거에서, 자유당 126명, 민주당 79명, 통일

15) 「대한민국국회50년사」, p.201.

16) 「의정자료집」, p.498.

당 1명, 무소속 27명이 각각 당선되었다.<sup>17)</sup>

제4대국회는 1958년 6월 7일 개원하여 의장단(의장 이기붕, 부의장 이재학·한희석)을 구성하고, 6월 27일에는 전원위원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여, 의장단, 전원위원장 및 14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자유당이 차지하였다.<sup>18)</sup>

수의 우위와 무력을 바탕으로 자유당은 1958년 12월 24일 야당의원들을 의사당 밖으로 끌어내고 자유당 의원들만으로 새 국가보안법 및 지방자치법개정안 등을 통과시킨 이른바 국가보안법 파동을 일으키고,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켰다.

결국 3·15 부정선거는 국민의 저항을 촉발시켰고, 4·19 의거로 이어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군이 진주하였으나 국민의 저항은 끊이질 않았다.

국회는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즉시 하야, 3·15 정·부통령선거 무효화 및 재선거 실시, 과도내각 조직, 완전내각책임제 개헌 단행, 개헌안 통과 후 민의원 해산 및 총선거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시국수습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sup>19)</sup>

이 결의가 있는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은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이를 바로 수리하였다. 이어 허정 과도내각이 구성되어 혼란한 정국수습에 나섰다.

시국수습결의안에 따라 국회는 헌법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내각제를 골격으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이 헌법개정안은 6월 15일 가결되어 같은 날 공포되었다. 이어 제4대국회는 개정헌법(제3차 개헌)에 따른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1960년 7월 28일 자진 해산하였다.<sup>20)</sup>

---

17) 「대한민국의정총람」, pp.493-494.

18) 이전 국회에서는 부의장 2석중 1석을 야당에게 할애하였다. 14개 상임위원회는 제3대 국회 전반기 13개 상임위원회와 후반기에 부흥위원회가 신설된 것이다(「대한민국국회50년사」, p.240.).

19) 「대한민국국회50년사」, p.245.

2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5), p.108.

4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약 2년만에 해산한 제4대국회 중 제출된 안건은 법률안 322건을 포함하여 총 642건이었다. 그중 300건이 가결되고 57건이 부결·폐기 등 처리되었으며, 285건이 임기종료로 폐기되었다.<sup>21)</sup>

#### (4) 제5대국회

1960년 7월 29일 제5대 국회의원(민의원) 및 초대 참의원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실시결과 민의원의원 선거에서는 의원정수 233명중 민주당 175명, 자유당 2명, 무소속 49명, 기타 정당 및 단체 7명이 각각 당선되어<sup>22)</sup> 민주당이 재적의원의 3분의 2를 넘는 제1당이 되었고, 참의원의원 선거에서는 의원정수 58명중 민주당 31명, 자유당 4명, 무소속 20명 기타 정당 및 단체 3명이 당선되어<sup>23)</sup>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1960년 8월 8일 제5대 민의원과 초대 참의원은 각각 첫 집회를 갖고 의장단을 구성하였다. 민의원의 의장에는 곽상훈의원이, 부의장에는 이영준·서민호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참의원의 의장에는 백낙준의원이, 부의장에는 소선규의원이 선출되었다.

그후 1960년 10월 2일에는 민의원의 13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었고 10월 7일에는 참의원의 9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어 원 구성이 완료되었다.<sup>24)</sup>

한편 국회는 1960년 8월 12일 양원합동회의를 소집하여 윤보선의원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8월 19일에는 민의원에서 장면의원이 국무총리로 인준을 받으면서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억압적인 자유당정권의 붕괴는 정치권력의 공백을 발생시키고 국민의 자유에 대한 과잉기대와 행사로 사회는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급기야는 전 정권의 단죄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조치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21) 「의정자료집」, p.499.

22) 「대한민국의정총람」, pp.512-513.

23) 「대한민국의정총람」, p.522.

24) 민의원의 13개 상임위원회는 제4대국회 14개 상임위원회중 징계자격위원회가 폐지된 것이다. 참의원의 9개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 내무, 외무국방, 재정경제, 예산결산, 산업, 문교사회, 교통체신, 운영위원회이다(「대한민국국회50년사」, pp.275-276.).

1960년 10월 11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sup>25)</sup>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1960년 10월 17일 헌법부칙을 개정(제4차 개헌)하여 3·15 부정선거관련자와 자유당정권하의 반민주행위자 및 부정축재자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만들었다.

1960년 7월 29일 총선거의 후보 공천시부터 신·구파로 나뉘어 갈등을 표출해온 민주당은 내각을 구성함에 있어 양파의 이해를 절충시키지 못하고 분열되어, 입각이 좌절된 민주당 구파는 국회에 별개의 원내교섭단체를 등록하였다.<sup>26)</sup>

이와 같은 집권여당의 분열로 정부는 과도기적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도 없었고,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던 쿠데타설에도 대비하지 못하여 1961년 5월 16일 군부 쿠데타로 붕괴되고 말았다.

1961년 5월 18일 군사혁명위원회의 포고로 해산될 때까지 약 9개월간 존속한 국회는, 그 기간 중 민의원에서는 법률안 296건을 포함한 총 57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52건이 가결되고, 68건이 부결·폐기 등 처리되었으며, 252건이 임기종료로 폐기되었고, 참의원에서는 법률안 280건을 포함한 총 42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187건이 가결되고 9건이 부결·폐기 등 처리되었으며, 230건이 임기종료로 폐기되었다.<sup>27)</sup>

#### (5)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년 5월 16일 쿠데타에 성공한 군부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5월 18일에는 군사혁명위원회(의장 장도영, 부의장 박정희) 포고 4호를 통해 장면정권의 인수와 국회해산 및 일체의 정치활동금지를 발표하였다. 이어 5월 20일에는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명칭을 바꾸고, 6월 6일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설치근거 및 지위를 부여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공포되었다.<sup>28)</sup>

25) 「대한민국국회50년사」, p.277.

26) 「대한민국국회50년사」, p.283.

27) 「대한민국국회50년사」, p.281.

28) 「대한민국국회50년사」, p.301.

이 법에 의하면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 군사혁명이 완수된 후 시행될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최고 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동법 제2조),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고(동법 제9조), 내각을 조직하며(동법 제14조),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동법 제22조제2항),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최고회의 의장, 부의장, 내각수반 순으로 하며(동법 제11조), 헌법의 규정 중 이 법과 저촉되는 규정은 이 법에 의하도록 하였다(동법 제24조). 또한 1961년 6월 10일 공포된 ‘국가재건최고회의법’에 의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법제사법, 내무, 외무, 국방, 재정경제, 교통체신, 문교사회, 운영기획의 분과위원회를 두고(동법 제5조), 중앙정보부 및 수도방위사령부를 둘 수 있도록 하여(동법 제18조 및 제23조)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집중되었다.

1961년 7월 3일 장도영 의장이 반혁명사건으로 사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박정희 의장 체제로 운영되었고, 1962년 3월 22일 윤보선 대통령이 사임함에 따라 3월 24일 박정희 의장이 대통령권한대행에 취임하였다.<sup>29)</sup>

1962년 7월 혁명공약에 따라 민정이양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마련할 헌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 위원회가 작성한 개헌안이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1962년 12월 26일 공포되었다.

개정헌법(제5차 개헌)은 통치구조면에서 단원제국회와 대통령중심제의 절충형을 채택하고, 정당조항을 강화하여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면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였다(동헌법 제36조제3항 및 제38조).

또한 헌법개정에 국민투표제를 도입하고(동헌법 제121조), 이 헌법은 이 헌법에 의한 국회가 처음으로 집회하는 날부터 시행하며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이 헌법의 시행과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다(동헌법 부칙).

1963년 1월부터 그 동안 금지되었던 정치활동이 재개되었다. 1월 6일에는 새 대통령선거법이 공포되었고 1월 15일에는 새 국회의원선거법이 공포되었다. 이들 법에 따라 1963년 10월 15일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29) 「대한민국국회50년사」, p.301.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었고, 1963년 11월 26일 제6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12월 17일 국회가 개원함으로써 1961년 5월 20일부터 2년 7개월 동안 존속하였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존속기간 중 법률안 1,162건을 포함한 총 1,593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1,436건을 가결시키고, 157건을 부결·폐기·철회 또는 반려하였다.<sup>30)</sup>

#### (6) 제6대국회

1963년 11월 26일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제6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결과는 의원정수 175명(지역구 131명, 전국구 44명) 중 민주공화당 110명(지역구 88명, 전국구 22명), 민정당 41명(지역구 27명, 전국구 14명), 민주당 13명(지역구 8명, 전국구 5명), 자유민주당 9명(지역구 6명, 전국구 3명), 국민의당 2명이 각각 당선되었다<sup>31)</sup>

1963년 12월 17일 첫 집회를 가진 국회는 의장단(의장 이호상, 부의장 장경순·나용균. 후반기는 의장 이호상, 부의장 장경순·이상철)을 선출하고, 이어 12월 24일에는 12개의 상임위원장(전원 민주공화당소속)을 선출하여 원 구성을 완료하였다.<sup>32)</sup>

한·일회담과 민주공화당의 일본자금수수설 및 한·일협정비준동의안 등으로 어수선했던 제6대국회의 임기 중 제출된 의안은 법률안 658건을 포함하여 총 1,194건이며, 그 중 671건이 가결되고, 306건이 부결·폐기 등 처리되었으며, 217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sup>33)</sup>

#### (7) 제7대국회

1967년 6월 8일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은 의원정수 175명중 129명(지역구 102명, 전국구 27명)을 차지하였고, 신민당

30) 「의정자료집」, p.501.

31) 「대한민국의회총람」, p.548.

32) 12개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 외무, 내무, 재정경제, 국방, 문교공보, 농림, 상공, 보건사회, 교통체신, 건설, 국회운영위원회이다(「대한민국국회50년사」, p.354.).

33) 「의정자료집」, p.502.

은 45명(지역구 28명, 전국구 17명), 대중당은 1명이 당선되었다.<sup>34)</sup>

개원 전부터 부정선거 문제로 여·야간 극한대립이 빚어지면서 1967년 7월 10일 소집된 첫 집회에는 야당의원들이 출석을 거부한 채, 여당의원들만 참석하여 의장단(의장 이효상, 부의장 장경순. 후반기에는 의장 이효상, 부의장 장경순·정성태)을 구성하였다.<sup>35)</sup>

이어 1967년 10월 5일에는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야당의원들에 대하여 의장직권으로 상임위원회를 배정하고, 12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원 구성을 마쳤다.

부정선거 후유증으로 국회의 공전이 장기화 되던 중 1967년 11월 6일 여·야가 협상을 시작하여 11월 20일 6·8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법 제정, 특위 구성, 특별국정감사 실시 등에 합의하면서 야당소속의원 전원이 국회에 등록하고 등원하게 되었다.<sup>36)</sup>

1967년 6월 8일 선거에서 129석을 차지함에 따라 개헌선을 확보한 민주공화당은 1969년 8월 7일 대통령의 계속연임을 3기에 한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탄핵요건을 강화하며, 국회의원수를 현행 150인이상 200인이하에서 250인 이내로 늘리고,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야당과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개헌안은 1969년 9월 14일 야당이 본회의장에서 농성하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장 건너편 제3별관에서 여당의원들만 모여 기명투표로 가결시키고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를 거쳐 10월 21일 공포되었다.

이 헌법개정(제6차 개헌)에 따라 1971년 4월 27일 실시된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부정선거시비와 3선개헌으로 얼룩졌던 제7대국회 중 제출된 의안은 법률안 535건을 포함하여 총 884건이었으며, 그 중 654건이 가결되고, 117

34) 「대한민국의정총람」, p.580.

35)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부의장 1석을 공석으로 한 것은 야당에게 할애했던 관례에 따른 것이다. 이 공석에는 1968.6.7 신민당의 윤제술 의원이 선출되었다(「대한민국 국회50년사」, p.407.).

36) 「대한민국국회50년사」, p.409.

건이 부결·폐기 등 처리되었으며, 113건이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sup>37)</sup>

#### (8) 제8대국회

1971년 5월 25일 제8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결과는 의원 정수 204명(지역구 153명, 전국구 51명)중 민주공화당 113명(지역구 86명, 전국구 27명), 신민당 89명(지역구 65명, 전국구 24명), 국민당 1명, 민중당 1명이 각각 당선되었다.<sup>38)</sup>

여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였으나, 제7대국회보다는 균형있는 의석분포를 갖추었다.

1971년 7월 26일 국회는 첫 집회를 갖고 의장단(의장 백두진, 부의장 장경순·정해영)을 선출하였다. 이어 7월 28일에는 13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원 구성을 마쳤다.<sup>39)</sup>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정부의 시책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하겠다는 취지의 국가비상사태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어 12월 21일 여당은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와 자원에 대한 동원 및 집회·시위·언론·출판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야당이 본회의장 및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적극저지에 나서자, 여당은 12월 27일 외무위원회 회의실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순차적으로 열고 원안 가결시켰다.<sup>40)</sup>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7·4남북공동성명에 의하여 조성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통일지향적 정치분위기 성숙 등 급변하는 정치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체제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논

37) 「의정자료집」, p.503.

38) 「대한민국의정총람」, p.610.

39) 13개 상임위원회는 제7대국회의 12개 상임위원회중 재정경제위원회가 재무위원회와 경제과학위원회로 분리된 것이다(「대한민국국회50년사」, p.461.).

40) 「대한민국국회50년사」, pp.463-464.

리를 내세워,<sup>41)</sup> 전국에 비상계엄선포, 국회해산과 정당 및 정치활동중지 등 헌법의 일부기능 정지, 효력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대행, 비상국무회의는 헌법개정안을 만들어 1972년말 이전에 헌정질서를 정상화시킨다는 내용의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회는 4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약 1년 3개월만에 해산되었다.<sup>42)</sup>

제8대국회 중 제출된 의안은 법률안 138건을 포함하여 총 245건이고, 그 중 111건이 가결되고 18건이 부결·폐기되었으며, 116건은 미처리되었다.<sup>43)</sup>

### (9) 비상국무회의

1972년 10월 17일 비상조치로 국회가 해산되고 국회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대행하게 되었다. 비상국무회의는 행정권의 주체인 국무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한 것으로<sup>44)</sup> 국민주권의 원리와 의회입법의 원칙을 무시한 변형적인 기구였다.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18일부터 1973년 3월 11일까지 존속하였으며 동기간 중 헌법개정안 1건, 법률안 270건 등 모두 31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sup>45)</sup>

1972년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가 공고한 개헌안은 11월 21일 국민투표를 거쳐 12월 27일 공포·시행되었다.

이 개정헌법(제7차 개헌, 소위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중임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고, 기본권의 제한 사유로서 국가안전보장이 추가되고 본질적 내용침해금지가 삭제되었으며(동헌법 제32조제2항),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여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선출

41)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5), p.115.

42) 「대한민국국회50년사」, p.467.

43) 「대한민국국회50년사」, p.469.

44) 1972.10.23 공포된 비상국무회의법에 의하면 비상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으로 구성하고(동법 제2조제1항), 해산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3조).

45) 「대한민국국회50년사」, p.497.

하게 하였고(동헌법 제39조 및 제40조), 대통령의 긴급조치권(동헌법 제53조)·국회해산권(동헌법 제59조)·국회의원추천권(동헌법 제40조제2항), 국회의 회기단축(동헌법 제82조제3항), 국정감사 폐지, 대통령의 법관임명권(동헌법 제103조), 헌법개정절차의 이원화(동헌법 제124조제2항)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입법권 및 사법권을 침해하였다.

#### (10) 제9대국회

1973년 2월 27일 임기 6년(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한 의원은 3년)의 제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의 특징은 기존의 전국선거구제(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1선거구에 2명의 의원을 선출(중선거구제)하였으며(1972.12.30 제정 국회의원선거법, 제16조), 정당추천뿐 아니라 무소속 입후보가 가능하였고(동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의원의 정수 중 3분의 1은 대통령이 추천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였다는 점이다(1972.10.27 개정 헌법 제40조).

선거결과 73개 지역구 의원정수 146명중 민주공화당 73명, 신민당 52명, 민주통일당 2명, 무소속 19명이 당선되었다. 이어 1973년 3월 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7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함에 따라 219명의 제9대 국회의원이 확정되었다.<sup>46)</sup>

1973년 3월 12일 국회는 첫 집회를 열어 의장단(의장 정일권, 부의장, 김진만. 후반기는 의장 정일권, 부의장 구태회·이민우)을 선출하고 3월 16일에는 13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원 구성을 마쳤다.<sup>47)</sup>

제9대국회는 국회의원에 대한 간접선거가 도입되고, 대통령은 국회해산권과 긴급조치권 등 강력한 권한이 있으나 이를 견제할 마땅한 장치가 없었으며, 국회의 회기 단축 및 국정감사권이 폐지되어 견제와 균형이 생명인 삼권분립원칙에 크게 미달하였다. 더구나 종래 의석에 비례하여 배분하던 전국구 의원을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하여 대통령이 관리함에 따라 일

46) 『대한민국국회50년사』, p.515.

47) 전반기 야당측 부의장 공석에는 1973.5.26 이철승 의원이 선출되었다(『대한민국국회50년사』, p.516.).

당 우위체제가 되어 국회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제9대국회 중 제출된 의안은 법률안 633건을 포함하여 총 952건이며, 그 중 797건이 가결되고, 72건이 부결·폐기 등 처리되었으며, 83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sup>48)</sup>

#### (11) 제10대국회

1978년 12월 12일 제1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154명(77개 선거구)의 지역구 의원정수 중 민주공화당 68명, 신민당 61명, 민주통일당 3명, 무소속 22명이 당선되었다.

이어 12월 21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77명의 의원을 선출함에 따라 231명의 제10대 국회의원이 확정되었다.<sup>49)</sup>

개원 전부터 야당이 유신정우회 소속의 백두진 의장후보자를 반대함에 따라 집회가 미루어지다가 결국 1979년 3월 17일 국회는 대부분의 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첫 집회를 열어 의장단(의장 백두진, 부의장 민관식·고홍문)을 선출하고, 3월 20일에는 13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원구성을 마쳤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측근에 의하여 시해당하는 10·26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1979년 12월 6일 최규하 국무총리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최규하 대통령은 1979년 12월 8일 유신헌법 반대금지를 골자로 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해제하고 긴급조치 위반자들을 석방했다.<sup>50)</sup>

한편 국회에서는 1979년 11월 26일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적인 새 헌법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1980년에 들어서면서 학원가의 민주화 요구로 위기를 느낀 정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선포지역에 제주도를 추가하여 전국으로 하고,

48) 「의정자료집」, p.505.

49) 「대한민국국회50년사」, p.563.

50) 「대한민국국회50년사」, p.575.

다음날 계엄당국은 정치활동중지, 집회 및 시위금지, 언론·출판의 사전검열, 각 대학 휴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고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국회의 활동이 중지되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촉발되었다.

국회활동이 중지됨에 따라 개헌작업은 정부측의 헌법개정심의위원회가 맡게 되었고 이 위원회의 개헌안이 국무회의 심의와 국민투표를 거쳐 1980년 10월 27일 공포되었다.<sup>51)</sup>

1980년 10월 27일 개정헌법(제8차 개헌)의 주요내용은 기본권을 강화하여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동헌법 제9조)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동헌법 제35조제2항),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과 국회해산권 제한(동헌법 제51조, 제57조), 비례대표제 및 국정조사권 부활(동헌법 제77조제3항, 제97조), 헌법개정절차를 일원화하여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하였다(동헌법 제131조).

한편 군부는 5·17 조치와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실권을 장악하였고, 동년 8월 27일 최규하 대통령의 사임(8월 16일)에 따른 보궐선거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전두환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1980년 10월 27일 공포된 개정헌법에서 제10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이 헌법시행과 동시에 종료하도록 하고(동헌법 부칙 제5조제1항),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도록(동부칙 제6조제1항) 정함에 따라 제10대 국회는 1980년 10월 27일 임기가 종료되었다.

제10대국회 중 제출된 안건은 법률안 129건을 포함 총 308건이며, 그 중 185건이 가결되고 78건이 부결·폐기 등 처리되었으며 45건이 임기종료로 폐기되었다.<sup>52)</sup>

## (12) 국가보위입법회의

1980년 10월 27일 개정헌법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첫 집회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1980년 10월 28일 국가보위입법회의

51) 허영, 앞의책, p.120.

52) 「의정자료집」, p.506.

가 설치되었다. 81명의 국가보위입법회의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1980. 10.28 제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제3조), 입법회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국회법 등 국회관계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였다(동법 제51조).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년 10월 29일 의장단(의장 이호, 부의장 정래혁·채문식)을 선출하고 7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다.<sup>53)</sup>

1981년 4월 10일까지 존속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존속기간 중 법률안 189건을 포함한 총 2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를 모두 처리하였다.<sup>54)</sup>

### (13) 제11대국회

1980.10.27 개정헌법에 따라 1981년 2월 25일 대통령선거인단을 통하여 민주정의당의 전두환 후보가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어 3월 25일에는 임기 4년의 제1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 되었다.

선거결과 의원정수 276명(92개선거구에서 2명씩 선출하는 지역구 184명, 전국구 92명)중 민주정의당 151명(지역구 90명, 전국구 61명), 민주한국당 81명(지역구 57명, 전국구 24명), 한국국민당 25명(지역구 18명, 전국구 7명), 기타 정당 8명, 무소속 11명이 각각 당선되었다.<sup>55)</sup>

1981년 4월 11일 제11대국회는 첫 집회를 열어 의장단(의장 정래혁, 부의장 채문식·김은하. 후반기는 의장 채문식, 부의장 윤길중·고재청)을 선출하고 4월 14일에는 13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원 구성을 마쳤다.<sup>56)</sup>

제11대국회 초반에는 여당의 대화와 타협이라는 운영방침과 야당의 자제로 순조로운 국회운영을 보이는 듯했다.<sup>57)</sup> 그러나 유신정권의 몰락 후

53) 7개 상임위원회는 운영, 법제사법, 외교국방, 내무, 경제제1, 경제제2, 문교공보위원회이다(국가보위입법회의법 제17조).

54) 「의정자료집」, p.507.

55) 「대한민국의정총람」, p.676.

56) 13개 상임위원회는 제8대국회부터 제12대국회까지 같다(「대한민국국회50년사」, p.620.).

57) 「대한민국국회50년사」, p.622.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채 군사 쿠데타의 주도세력에 의하여 생성된 헌법개정과 변칙적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진 법률에 기초한 전두환 정부는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로 끊임없는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되었다.<sup>58)</sup>

제11대 국회 중 제출된 안건은 법률안 489건을 포함하여 772건이며, 그 중 578건이 가결되고, 120건이 부결·폐기 등 처리되었으며, 74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sup>59)</sup>

#### (14) 제12대 국회

1985년 2월 12일 제1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의원 정수 276명(지역구 184명, 전국구 92명)중 민주정의당 148명(지역구 87명, 전국구 61명), 신한민주당 67명(지역구 50명, 전국구 17명), 민주한국당 35명(지역구 26명, 전국구 9명), 한국국민당 20명(지역구 15명, 전국구 5명), 신정사회당 1명, 신민주당 1명, 무소속 4명이 각각 당선되었다.<sup>60)</sup> 그러나 총선 이후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신한민주당으로 이적함에 따라 야당은 비교적 강하게 여당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1985년 5월 13일 제12대 국회는 첫 집회를 열어 의장단(의장 이재형, 부의장 최영철·김록영, 후반기에는 의장 이재형, 부의장 장성만·조연하)을 구성하고, 5월 15일에는 13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원 구성을 마쳤다.<sup>61)</sup>

1985년 4월 9일 북한이 국회의장 앞으로 보낸 최고인민회의 의장(양형섭) 명의의 서한을 통하여 남북간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해 오에 따라, 국회는 6월 1일 남북국회회담에 관한 회신 서한 문안이 담긴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6월 3일 통일헌법제정을 위한 남북간의 협의기구 구성문제와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국회회담의 개최를 환영하며 이를

58) 허영, 앞의책, p.123.

59) 「의정자료집」, p.508.

60) 「대한민국의정총람」, p.696.

61) 「대한민국국회50년사」, p.667.

위한 쌍방국회의원 각5명이 참가하는 예비접촉을 7월중 판문점에서 갖자는 취지의 서한을 국회의장(이재형) 명의로 발송하였다. 북한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남북국회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예비접촉이 7월 23일과 9월 25일 두 차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차이(북한은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문제를 우선 토의해야 한다고 주장, 남측은 통일헌법을 기초하기 위한 기구 구성문제와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의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북한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남북간의 모든 대화를 중단시킴에 따라 예비접촉도 중단되었다.<sup>62)</sup>

제12대 국회는 첫 집회일부터 여·야간 호헌과 개헌의 첨예한 대립의 연속이었다. 이는 1980년 10월 27일 개정헌법이 대통령직선제 등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관되게 개헌논의를 외면해오던 전두환 정부는 결국 1987년 6월 국민적 저항(6월항쟁)을 맞게되고,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 대통령직선제로의 개헌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곧바로 개헌 작업에 착수, 헌법개정안을 만들어 1987년 10월 12일 국회에서의 의결과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10월 29일 제9차 개정헌법(현행헌법)이 공포되었다.

1987년 10월 29일 개정헌법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간 합의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적법절차조항 신설(동헌법 제12조제3항)과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와 검열금지(동헌법 제21조제2항)등 기본권 강화, 국정감사권 부활(동헌법 제61조), 대통령의 직선제(동헌법 제67조제1항),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과 국회해산권 폐지, 대법관제의 부활(동헌법 제102조제2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62) 남북국회회담에 대한 시도는 13대국회에서도 있었다. 1988.7.18 김재순 국회의장이 서울올림픽대회에 북한참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양형섭)앞으로 보내자, 북한측은 남북국회연석회의를 제의하면서 남북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초안을 보내왔다. 이로써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이 1988.8.19부터 1990.1.24사이에 10차례 있었다. 그러나 쌍방간 견해차이로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1990.2.8 북한측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핑계삼아 모든 남북대화를 중단함으로써 준비접촉 역시 중단되었다(통일부, 「통일부30년사」, (통일부, 1999), pp.139-147.).

제12대국회는 1987년 10월 29일 개정헌법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이 1988년 5월 30일 첫 집회를 갖게 됨에 따라 4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임기가 종료되었다.<sup>63)</sup>

제12대국회 중 제출된 의안은 법률안 379건을 포함하여 총 641건이며, 그 중 412건이 가결되고, 99건이 부결·폐기 등 처리되었으며, 130건이 임기종료로 폐기되었다.<sup>64)</sup>

### (15) 제13대국회

1988년 4월 26일 제13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299명(지역구 224명, 전국구 75명)을 선출하는 이 선거에서 민주정의당 125명(지역구 87명, 전국구 38명), 평화민주당 70명(지역구 54명, 전국구 16명), 통일민주당 59명(지역구 46명, 전국구 13명), 신민주공화당 35명(지역구 27명, 전국구 8명), 한겨레민주당 1명, 무소속 9명이 각각 당선되었다.<sup>65)</sup>

선거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13대국회는 여당이 다수당이기는 하나 과반수에서 25석이 모자라는 여소야대의 형태로 출발하였다(그러나 1990년 2월 9일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합당으로 216석의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이 만들어 졌다).

1988년 5월 30일 제13대국회는 첫 집회를 열어 의장단(의장 김재순, 부의장 노승환·김재광. 후반기에는 의장 박준규, 부의장 조윤형·김재광)을 구성하고 6월 20일에는 1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원 구성을 마쳤다.<sup>66)</sup>

제13대국회에서는 1972년 12월 27일 개정된 유신헌법으로 폐지되었던 국정감사가 부활되어 실시되었고, 의정사상 처음으로 청문회가 도입되어

63) 1987.10.29 개정헌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 실시하고(제1항), 이 헌법공포당시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 집회일 전일까지로 하였다(제2항).

64) 『의정자료집』, p.509.

65) 『대한민국의정총람』, p.715.

66) 16개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 법제사법, 외무통일, 행정, 내무, 재무, 경제과학, 국방, 문교공보, 농림수산, 상공, 동력자원, 보건사회, 노동, 교통체신, 건설위원회이다 (『대한민국국회50년사』, pp.707-708.).

‘일해재단 설립배경 및 자금조성관련 청문회’, ‘언론문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청문회’가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실시되었다.<sup>67)</sup>

제13대국회 중 제출된 안건은 법률안 938건을 포함하여 총 1,439건이며, 그 중 864건이 가결되고, 413건이 부결·폐기 등 처리되었으며, 162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sup>68)</sup>

#### (16) 제14대국회

1992년 3월 24일 제14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의원 정수 299명(지역구 237명, 전국구 62명)중 민주자유당 149명(지역구 116명, 전국구 33명), 민주당 97명(지역구 75명, 전국구 22명), 통일국민당 31명(지역구 24명, 전국구 7명), 신정당 1명, 무소속 21명이 각각 당선되었다.<sup>69)</sup>

1992년 6월 29일 제14대국회는 첫 집회를 열어 의장단(의장 박준규, 부의장 황낙주·허경만. 후반기에는 의장 황낙주, 부의장 이춘구·홍영기)를 선출하고, 10월 2일에는 17개 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장을 선출하여 원 구성을 마쳤다.<sup>70)</sup>

제14대국회 초기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실시 시기를 놓고 대립을 보였던 여·야는 1992년 8월 12일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케하고, 1994년 3월 4일에는 여·야 만장일치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1991년 주민직선에 의한 지방의회 구성 후에도 연기되어 왔던 단체장의 선거가 1995년 6월 27일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어<sup>71)</sup>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이 이루어 졌다.

67) 『대한민국국회50년사』, p.710.

68) 『의정자료집』, p.510.

69) 『대한민국의정총람』, p.733.

70) 17개 상임위원회는 제13대의 16개 상임위원회중 문교공보위원회가 문화공보위원회 및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로 분리된 것이다(『대한민국국회50년사』, p.773.).

71) 김홍대, 『지방자치입법론』, (박영사, 1999), p.44.

제14대국회 중 1992년 12월 18일에는 제14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1995년도 정기국회 중에는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폭로되면서 전직대통령이 비리혐의로 처벌받고, 여·야간에는 1992년 대선자금 문제로 공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제14대국회 중 제출된 안건은 법률안 902건을 포함하여 총 1,439건이며, 그 중 1,112건이 가결되고, 176건이 부결·폐기 등 처리되었으며 151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sup>72)</sup>

### (17) 제15대국회

1996년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의원 정수 299명(지역구 253명, 전국구 46명)중 신한국당 139명(지역구 121명, 전국구 18명), 새정치국민회의 79명(지역구 66명, 전국구 13명), 자유민주연합 50명(지역구 41, 전국구 9명), 민주당 15명(지역구 9명, 전국구 6명), 무소속 16명이 각각 당선되었다.<sup>73)</sup>

1996년 7월 4일 제15대국회는 첫 집회를 열어 의장단(의장 김수환, 부의장 오세응·김영배. 후반기에는 의장 박준규, 부의장 신상우·김봉호)을 선출하고 7월 15일에는 16개 상임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여성특별위원장을 선출하여 원 구성을 마쳤다.<sup>74)</sup>

개원 전부터 부정선거와 여당의 과반수 확보문제로 대치하였던 여·야는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후보 당선)와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환란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대선당시 불법정치자금 조성문제, 부풍문제, 환란의 책임규명 등이 여·야간 정권교체와 맞물려 야당 단독 국회소집등 장기간 공전의 국회 파행이 계속되었다. 이에 시민단체가 국회파행의 책임소재를 가리고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모니터를 실시한 것도 15대국회의 한 특징이었다.

72) 「의정자료집」, p.511.

73) <동아일보>, 1996년 4월 13일자.

74) 16개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 법제사법, 행정, 재정경제, 통일외무, 내무, 국방, 교육, 문화체육공보, 농림수산, 통상산업, 통신과학기술, 환경노동, 보건복지, 건설교통, 정보위원회이다(「대한민국국회50년사」, p.836.).

또한 국회는 의정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여, 헌법에 의하여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였다(2000. 2. 16 개정 국회법 제46조의3).

제15대국회 중 제출된 의안은 법률안 1,951건을 포함하여 총 2,570건이며, 그 중 1,617건이 가결되고, 494건이 부결·폐기 등 처리되었으며, 459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sup>75)</sup>

### (18) 제16대국회의 원 구성

2000년 4월 13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선거사상 처음으로 시민단체가 부적격한 후보의 낙선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충원과정에서부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선거결과 의원정수 273명(지역구 227명, 전국구 46명)중 한나라당 133명(지역구 112명, 전국구 21명), 민주당 115명(지역구 96명, 전국구 19명), 자유민주연합 17명(지역구 12명, 전국구 5명), 민국당 2명(지역구 1명, 전국구 1명), 한국신당 1명, 무소속 5명이 각각 당선되었다.<sup>76)</sup>

2000년 6월 5일 국회는 첫 집회를 열어 의장단(의장 이만섭, 부의장 홍사덕·김종호)을 선출하고 6월 16일에는 16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윤리·여성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여 원 구성을 마쳤다.<sup>77)</sup>

## 3. 헌법상 국회의 권한·기능의 변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이래 아홉 번의 개정과 세 번의 헌정중단이 있었다. 헌법개정은 어떤 의도에서 이루

75) 「의정자료집」, p.512.

76) <동아일보>, 2000년 4월 14일자.

77) 16개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정자치,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보건복지, 환경노동, 건설교통, 정보위원회이다[「국회본회의회의록」 제212회(2000.6.16), pp.2-6.].

## 제 2 장 남·북한 의회의 성립과 변천

어졌든 그 시대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제헌이래 아홉번의 개헌이 있었다는 것은 남한 사회에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의 개정에 따라 국회의 권한·기능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다. 이를 현행 헌법에 규정된 국회관련조항의 순서에 따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입법권(제40조)

입법권이 국회에 속함은 제헌이래 똑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회의 구성(제41조)

국회가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는 점은 공통되나, 제5차개헌에서는 국회의원 후보는 정당소속으로 한정하고(제6차개헌까지), 제7차개헌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하기도 하였다.

참고로 비례대표제는 제5차개헌 직후 1963년 1월 16일에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 의원의 임기(제42조)

제1차-제4차 개정헌법까지 헌법상 존재하였던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었고 제7차개정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임기 6년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한 국회의원의 임기 3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4년을 임기로 규정하였다.

의원의 겸직제한(제43조), 불체포특권(제44조), 면책특권(제45조)등은 별 변동이 없었다.

### 회의(제47조)

제7차개헌과 제8차개헌에서 연간 총 회의(정기회·임시회) 일수를 150일로 제한한 적이 있었다.

의장단 구성(제48조), 의사공개의 원칙(제50조), 법률안제출권(제52조)등은 별 변동이 없었다.

의결정족수와 의결방법(제49조)

제적의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하는 원칙은 공통되나, 제5차개헌 이전에는 가부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하였다.

회기계속의 원칙(제51조)은 제5차개헌때부터 규정되었으며, 예산안 심의확정(제54조), 조약체결·비준, 선전포고 등의 동의권(제60조)도 별 변동이 없었다.

국정감사·조사권(제61조)은 제7차개헌때 삭제되었다가 제8차개헌때 다시 도입되었으며, 제7차·제8차개헌에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규정되어 있었다.

이밖에도 국회는 대통령의 선거권(제67조②), 긴급조치의 승인권(제76조③), 계엄해제요권(제77조⑤), 일반사면동의권(제79조②),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권(제86조①, 제98조②, 제104조①, 제111조④),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권(제111조③, 제114조②)과 헌법개정안의 제안(제128조①) 및 헌법개정안의 의결권(제130조①)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변동사항은

다음의 <표 1> '헌법상 국회의 권한·기능변천표'에 나타나 바와 같다. 제4차개정헌법(1960.11. 29)은 3·15 부정선거관련자, 자유당 치하에서의 반민주행위자, 부정축재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판소, 특별검찰부 설치를 위하여 헌법부칙을 신설한 것으로, 본문의 규정은 제3차개정헌법과 같아 위 표에 실지 않았다.



## 제 2 절 최고인민회의의 성립과 변천

### 1. 최고인민회의의 성립

1945년 8월 24일 평양에 입성한 소련군은 곧 북조선주둔 소련군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소련군이 진주하기에 앞서 북한에는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본인 지사로부터 전권을 이양 받아 북한의 실질적 권력중심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sup>78)</sup>

소련군사령관 치스차코프(Ivan M. Chistiakov)는 8월 26일 평남건준위를 해체하고 좌우연합체인 ‘평남인민정치위원회’를 조직하여 그 위원장에 조만식을 추대하였다.<sup>79)</sup>

좌우 합작의 방법으로 소련군사령부는 10월 8일에는 ‘북조선 5도 임시인민위원회’(위원장 조만식)을 구성하고 이어 10월 28일에는 이를 ‘북조선 5도 행정국’으로 개편하였다. 조만식을 수반으로 한 5도 행정국은 공산주의자와 비공산주의자의 연립형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북한의 태아적 정권이였다.<sup>80)</sup>

그러나 5도 행정국은 통합적인 기능이 미약하여 사실상 행정은 각 도인민위원회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sup>81)</sup> 중앙집권적인 기관의 필요성은 1945년 10월 10일 김일성이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창립대회에서 행한 보고 연설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김일성은 이 연설에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하려면 먼저 북조선에서 하루 빨리 민주주의적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인민대중의 단합된 힘으로 북조선 중앙주권기관을 내와야”하고 “북조선 중앙주권기관을 창설하여야만 북조선에서 민주주의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고 우리 혁명을 적극 밀고 나갈 수 있으며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토대를 튼튼히 닦을 수” 있다고 하며 중앙주권기관인 북조

78) 김학준, “분단의 배경과 고정화과정”, 송건호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91), p.78.

79) 이계만, 『북한국가기관론』, (대영문화사, 1992), p.85.

80) 김학준, 위 논문, p.80.

81) 손희두, 『미군정의 대한정책과 의회제도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1993), p.145.

선 임시인민위원회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82)</sup>

결국 1946년 2월 8일 평양에서 소집된 ‘북조선 민주정당·사회단체·5도행정국·인민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의 구성을 결정하였다.

‘임시인민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동 위원회는 북조선 최고행정주권기관이고(동규정 제1조), 북조선의 인민사회단체 국가기관이 실행할 임시법령을 제정·공포하며(동규정 제3조), 북조선 최고재판소·검찰소를 조직하도록 하여(동규정 제9조) 입법과 행정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1946년 3월 23일 김일성은 방송연설을 통하여 일제통치의 잔재숙청, 토지개혁 등 20개조 정강을 발표하고<sup>83)</sup>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하여 추진해 나아갔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9월 5일 제2차 확대위원회에서 동년 11월 3일 면·군·시·도 인민위원회 선거를 결정(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7호)하였고,<sup>84)</sup> 1947년 1월 7일에는 하부말단 기관인 면·리(동) 인민위원회 선거(면은 동년 3월 5일, 리(동)은 동년 2월 24, 25일)를 시행할 것을 결정(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46호)하였다.

이렇듯 선거를 실시한 이유는 김일성이 1946년 9월 25일 북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인민위원회 위원 선거에 대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인민정권이 완전한 법적 기초를 가지게”하기 위함이었다.<sup>85)</sup>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인 북조선 인민회의를 창설하기 위한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가 1947년 2월 17일 평양에서 소집되었다. 대회는 도·시·군 인민위원회 위원 3명당 1명의 비율로 선출된 대표와 정당·사회단체에서 각각 5명씩 선출된 대표로 구성되었다.<sup>86)</sup>

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표 5명당 1명의 비율로

82) 통일연구원편, 『CD-ROM 김일성저작집』제1권, (동방미디어, 2000), p.321.

83) 『CD-ROM 김일성저작집』제2권, pp.125-127.

84) 실제로는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만 실시되었다[과학, 백과사전출판사편, 『조선전사』제24권,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p.17.].

85) 『CD-ROM 김일성저작집』제2권, p.422.

86) 『조선전사』제24권, p.32.

237명이 선출되었다. 인민회의의 대의원의 정당별 구성을 보면 노동당 86명(36%), 민주당 30명(13%), 청우당 30명(13%), 무소속 91명(38%)이었다.<sup>87)</sup>

1947년 2월 4일 공포된 「인민회의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북조선 인민회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수립되기까지 북조선 인민정권의 최고기관이고(제1조), 입법권을 행사하며(제2조), 북조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선거·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조직·북조선 최고재판소의 선거·북조선 검찰소장의 임명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였다(제6조제14호-제17호).

1947년 2월 21일 제1차 북조선 인민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인민회의는 김두봉을 의장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를 선거하고,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sup>88)</sup>

이제 북한으로서 남은 절차는 헌법 제정과 그에 따른 정권의 수립이었다.

1947년 11월 18일 북조선 인민회의는 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 초안을 작성케 하였다. 헌법초안은 1948년 4월 28일 소집된 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통과되었고, 7월 10일 인민회의는 이 헌법의 실시를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다.<sup>89)</sup>

인구 5만명당 1인을 뽑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조작된 남한출신 대의원 360명을 포함하여 572명이 선출되었다.<sup>90)</sup>

1948년 9월 2일 소집된 제1기 최고인민회의는 9월 8일 헌법을 채택하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임, 내각을 조직케 하여,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출범시켰다.<sup>91)</sup>

1948년 9월 8일 제정헌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주권기관으로(제32조), 입법권을 행사하며(제33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이고(제36조), 헌법의 승인 또는 수정·국내외 정책에 관한 기본원칙 수립·최고인

87) 「조선전사」 제24권, p.33.

88) 손희두, 앞의 논문, pp.155-156.

89) 김학준, 앞의 논문, p.95.

90) 북한연구소편, 「북한총람」, (동아출판사, 1994), p.171.

91)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 I 집, (국토통일원, 1988), pp.11-118.

민회의 상임위원회 선거·내각의 조직·인민계획 경제의 승인·국가예산의 승인·최고재판소의 선거·검사총장의 임명 등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제37조).

한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의 최고주권기관으로(제47조) 최고인민회의 소집·헌법 및 법령의 실시에 대한 감독·법령의 공포·훈장 또는 명예 칭호의 수여·외국과의 조약의 비준 및 폐기·외국에 주재하는 대사와 공사의 임명 및 소환·외국사신의 신임장 및 해임장의 접수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였다(제49조).

## 2. 각 기별 최고인민회의의 활동과 변화<sup>92)</sup>

### (1) 제1기

1945년 8월 25일 제1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 의하여 572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제1기 최고인민회의는 1945년 9월 2일 1차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의장단 등을 선거하였다.

- 최고인민회의
  - 의 장 : 허 현
  - 부 의 장 : 김달현, 리 영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위 원 장 : 김두봉
  - 부위원장 : 홍남표, 홍기주
  - 서 기 장 : 강량욱
  - 위 원 : 강진건, 함주식, 구재수, 리구훈, 박정애, 김창준, 장순명, 장 권, 류영준, 박윤길, 라승규, 최경덕, 이능중, 김병제, 리기영, 강 순, 조 운

---

92) 제1기-제8기는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 I 집-제 IV집을, 제9기-제10기는 통일부의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헌법상 임기 3년의 제1기 최고인민회의는 1948년 9월부터 1957년 9월까지 약 9년 동안 존속하며 13차례의 회의를 가졌다.<sup>93)</sup>

1차 회의에서는 헌법의 승인과 그 실시에 관한 결정, 정부의 구성, 최고재판소 선거, 검사총장 임명 등 주로 국가기관을 형성하였고, 6·25 전쟁 이전인 2차-5차 회의에서는 지방주권기관(도·시·군·면·리 인민위원회)의 형성, 행정구역 개편 등 행정기관 체제 정비와 인민경제계획 부흥 발전을 위한 2개년(1949-1950)계획에 관한 법령 채택, 정부대표단의 소련 방문사업에 대한 토론, 남한의 이승만 정부를 비방하는 평화옹호세계위원회 평화제의 호소문 채택이 있었다.

6·25 전쟁후인 6차-13차 회의에서는 소련·중공 및 인민민주주의 제 국가들에 파견하였던 정부 대표단의 사업에 관한 토론, 인민경제복구 발전 3개년(1954-1956)계획에 관한 법령 채택,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제네바 회의에서의 정부 대표단의 사업에 대한 토론, 통일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남·북한 각 정당 사회단체 및 각종대표 연석회의를 주장한 최고인민회의 호소문 채택, 농촌 경리를 발전시킬데 대한 토론, 주민소득세·주민지방자치세에 관한 토론, 소련을 방문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의 귀환보고, 이승만 정부를 비방하는 민의원과 전체 남조선 사회계에 보내는 최고인민회의 서한 채택, 그리고 매년 책정되는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의와 법령화가 있었다.

요컨대 제1기 최고인민회의 임기동안 북한에서는 국가체제정비 및 전후 복구사업과 6·25전쟁이후 정적 숙청 및 소위 반종파 운동을 전개하여 김일성 중심의 권력체제기반을 굳히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 (2) 제2기

1957년 8월 27일 제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임기 4년의 215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제2기 최고인민회의는 1957년 9월 18일 1차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

93) 최고인민회의가 임기를 초과할 수 있는 것은 헌법 제46조에 비상사태(6·25 전쟁으로 생각됨)가 생겼을 경우 임기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같이 의장단 및 위원장을 선출하였다.

○ 최고인민회의

- 의 장 : 최원택
- 부 의 장 : 리기영, 김창준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위 원 장 : 최용건
- 부위원장 : 리극로, 현칠중, 김원봉
- 서 기 장 : 강량욱
- 위 원 : 박정애, 강진건, 성주식, 김병제, 원홍구, 리만규,  
리송운, 한상두, 김창덕, 정로식, 김천혜, 하양천,  
장해우, 계응상, 리면상, 송 영

○ 위원회

-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 리효순
- 법제위원회 위원장 : 김의선
- 예산위원회 위원장 : 송봉욱
- 외교위원회 위원장 : 김창만

제2기 최고인민회의는 1957년 9월부터 1962년 10월까지 약 5년 2개월의 임기동안 11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주요 활동내역을 보면 1차 회의(1957.9.18-9.20)에서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내각을 조직하고 최고재판소 소장 선거 및 검사총장의 임명이 있었고, 3차 회의(1958.6.9-6.11)에서는 인민경제발전 1차5개년(1957-1961)계획에 관한 법령 채택, 4차 회의(1958.10.1-10.2)에서는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기술의무교육제 실시를 준비할데 관한 법령 채택, 5차 회의(1959.2.19-2.21)에서는 농업현물세에관한 법령 채택, 6차 회의(1959.10.26-10.28)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문제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민의원 및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서한 채택, 인민교육체계를 개편할데 관한 법령 채택, 7차 회의(1960.2.25-2.27)에서는 인민보건사업을 강화할데 관한 결정 채택, 8차 회의(1960.11.19-11.24)에서는 미군

철수·연방제실시·경제문화교류·군대축소를 주장하는 대한민국 국회 및 남조선 제정당, 사회단체들과 인민들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 남북조선의 경제문화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남조선에서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할데 대한 의견서 채택, 11차 회의(1962.6.20-6.21)에서는 미군철수 및 반미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국가재건최고회의 및 남조선 사회정치활동가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는 서한 채택이 있었다.

이 시기의 북한은 전후 추진되어 왔던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사업이 마무리되었고, 제1차 5개년 계획의 성과로<sup>94)</sup> 김일성에 의한 유일적 지도체계가 공고히 되어 갔다.

### (3) 제3기

1962년 10월 8일 제3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383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대의원의 수가 상당히 늘어난 것은 종전 5만명당 1인의 선거구가 3만명당 1인의 선거구로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제3기 최고인민회의는 1962년 10월 22일 1차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의장단 및 위원장을 선출하였다.

#### ○ 최고인민회의

- 의 장 : 최월택
- 부 의 장 : 리기영, 김득란

####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위 원 장 : 최용건
- 부위원장 : 박정애, 홍명희, 백남운, 박금철, 강량욱
- 서 기 장 : 립춘추

---

94) 김일성은 1961년 9월 11일 소집된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우리나라에서 농업, 수공업 및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사업은 모두 다 전후시기에 전면적으로 전개되었으며 1958년에 와서 거의 동시에 끝났습니다.”라고 발표하였다(『CD-ROM 김일성저작집』 제15권, p.161.). 또한 김일성은 5개년 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어 1957년부터 1960년까지 공업 총생산액은 3.5배, 생산의 연평균 증가속도는 36.6%, 1960년의 공업생산은 1944년에 비해 7.6배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CD-ROM 김일성저작집』 제15권, pp.174-175.).

- 위 원 : 리효순, 하양천, 현무광, 박신덕, 최 현, 리영호,  
김왈룡, 김옥순, 로익명, 김창덕, 송 영, 리만규,  
리면상, 계응상, 리재복, 도유호

○ 위원회

-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 최용진
- 법제위원회 위원장 : 김익선
- 예산위원회 위원장 : 림계철
- 외교위원회 위원장 : 박용국

제3기 최고인민회의는 1962년 10월부터 1967년 12월까지 약 5년 1개월의 임기동안 7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주요활동내역을 보면 1차 회의(1962.10.22-10.23)에서는 관례대로 내각(수상 김일성)을 조직하고 최고재판소 소장 선거 및 검사총장을 임명하고, 3차 회의(1964.3.26-3.28)에서는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법령 채택, 한일회담을 분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할데 대한 보고와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내용의 남조선인민들과 제정당·사회단체 인사들 및 남조선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4차 회의(1965.5.20-5.24)에서는 미제 침략을 반대하는 월남인민의 정의 투쟁을 적극 지원할데 대한 토론, 전 민족이 단합하여 범죄적인 한일회담을 분쇄할데 대한 토론, 한일회담과 월남전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결정 채택, 5차 회의(1966.4.27-4.29)에서는 농업현물 세제를 완전히 폐지할데 대한 법령 채택, 월남파병을 반대하도록 선동하는 내용의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북부월남을 지지하는 내용의 월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에 보내는 편지 채택, 6차 회의(1966.11.22-11.24)에서는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 채택 등이 있었다.

이 시기에 북한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 경공업과 농업의 병행발전, 전국적 기술혁신, 문화혁명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목표로 1961년부터 시작된 제1차 7개년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군사력 강화 우선 정책에 따른 경공업과 농업의 부진, 이념분쟁으로 인한 중국과 소련으로부터의 원조중단 등으



로 동 계획을 3년간 연장하기에 이르렀다.<sup>95)</sup>

또한 중립적 입장의 자주노선표방 및 주민재등록사업(1966.4.- 1967.3)을 통하여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 (4) 제4기

1967년 11월 25일 제4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457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제4기 최고인민회의는 1967년 12월 14일 1차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의장단 및 위원장을 선출하였다.

- 최고인민회의
  - 의 장 : 백남운
  - 부 의 장 : 리기영, 김득란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위 원 장 : 최용건
  - 부위원장 : 홍명희, 박정애, 강량욱, 리영호
  - 서 기 장 : 박문규
  - 위 원 : 최 현, 허봉학, 김영주, 리국진, 최 광, 오진우, 김동규, 박신덕, 김려중
- 위원회
  -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 리국진
  - 법제위원회 위원장 : 김려중
  - 예산위원회 위원장 : 림계월
  - 외교위원회 위원장 : 서 철

제4기 최고인민회의는 1967년 12월부터 1972년 12월까지 약 5년 1개월의 임기동안 6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나, 매년 행해지는 결산과 예산 심사

---

95) 김일성은 1966년 10월 조선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원수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혁명노선을 내놓았으며 이에 따라 7개년계획수행을 3년동안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발표하였다(『조선전사』 제31권, p.24.).

를 제외하면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

주요 활동내역을 보면 1차 회의(1967.12.14-12.16)에서 관례대로 내각(수상 김일성)의 조직, 최고재판소 소장선거, 검사총장 임명 등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5차 회의(1971.4.12-4.14)에서 현 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한 토론, 박정희 정부를 비방하고 김일성의 조국통일기본방침을 주장하는 내용의 남조선 동포 형제자매들과 제정당, 사회단체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미국의 월남, 라오스 참전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도지나 정세와 관련한 성명 채택, 6차 회의(1972.4.29-4.30)에서는 「캄보자」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하는 성명 채택이 있었다.

#### (5) 제5기

1972년 12월 12일 제5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541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제5기 최고인민회의는 1972년 12월 25일 1차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의장단 및 위원장을 선출하였다.

- 최고인민회의
  - 의 장 : 황장엽
  - 부 의 장 : 홍기문, 허정숙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 의 장 : 황장엽
  - 부 의 장 : 홍기문, 허정숙
  - 사 무 장 : 전창철
  - 의 원 : 황장엽, 홍기문, 허정숙, 서 철, 한익수, 전창철, 박신덕, 김영남, 정준기, 럽태준, 김성애, 김이훈, 리영복, 윤기복, 리두찬, 강성산, 오현주, 천세봉, 리면상
- 위원회
  -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 김동규
  - 예산심의위원회 위원장 : 오태봉

- 법안심의위원회 위원장 : 윤기복

제5기 최고인민회의는 1972년 12월부터 1977년 12월까지 약 5년의 임기동안 7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주요 활동내역을 보면 1차 회의(1972.12.25-12.28)에서 소위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주석(김일성),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및 위원, 정무원 총리, 중앙재판소 소장 등을 선거하고, 정무원 성원과 중앙검찰소 소장 등을 임명하여 중앙국가기관을 형성하였고, 2차 회의(1973.4.5-4.10)에서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데 대한 결정 채택, 전반적 10년제 고종의무교육과 1년제 학년전 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 채택, 3차 회의(1974.3.20-3.25)에서는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법령 채택,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를 마련할데 대한 토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체결하자는 내용의 미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 채택, 4차 회의(1974.11.27-11.30)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빠른 시일 안에 완전히 실현할데 대한 결정 채택, 5차 회의(1975.4.8-4.10)에서는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에 관한 법령집행 총화에 대한 결정 채택, 6차 회의(1976.4.27-4.29)에서는 어린이보육교양법 채택, 7차회의(1977.4.26 -4.29)에서는 토지법 채택 등이 있었다.

제5기 최고인민회의의 특징은 1972년 12월 25일 헌법개정으로 중앙국가기관의 변동과 최고인민회의 권한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

개정헌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헌법의 제1장 '근본원칙'이 '정치' '경제' '문화'로 세분화 되었고, 구헌법의 국가주권 최고집행기관인 '내각'은 '정무원'으로 부문적 집행기관인 '성'은 '부'로, 구헌법의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는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헌법의 개정으로 중앙인민위원회와 주석제가 신설되었다.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하고(개정헌법 제89조),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하며(동헌법 제91조),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고(동헌법 제93조), 법령 등의 공포(동헌법 제94조), 특사

권행사(동헌법 제95조), 조약의 비준·폐기(동헌법 제96조), 다른나라 사신의 신임장·소환장 접수(동헌법 제97조)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중앙인민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동헌법 제100조), 주석, 부주석,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하며(동헌법 제102조), 대내정책위원회·대외정책위원회·국방위원회·사법안전위원회 등 부문별위원회를 두고 있다(동헌법 제105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주석이 수위(首位)이며 대내외 정책수립, 정무원과 지방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 사업지도, 사법·검찰기관 사업지도, 법령·주석명령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결정·지시를 폐지, 정무원의 부를 내오거나 없앴,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각 부장·성원들을 임명·해임, 대사와 공사를 임명·소환, 중요 군사간부를 임명·해임하며 장령군사 칭호 수여, 대사(大赦)실시,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치고, 유사시에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동헌법 제103조). 결국 신설된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는 구헌법상 최고인민회의와 상임위원회의가 갖고 있던 권한을 이양 받은 것으로, 개정헌법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의 권한과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개정헌법으로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상설회의'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장'과 '부의장'으로, '서기장'과 '위원'을 '사무장'과 '의원'으로 각각 개칭되었으며, 구헌법에서 정하였던 위원정수를 삭제하고, 상설회의의 의장·부의장은 최고 인민회의의 의장·부의장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구헌법상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 휴회 중에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무위원회'를 각각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로 개칭하였고,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행정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요컨대 이 개정헌법은 7·4 남북공동성명의 화해분위기 속에서 단행된 유신헌법(1972.12.27 개정헌법)과 맥을 같이하며,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김일성의 유일적 지도체계의 완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6) 제6기

1977년 11월 11일 제6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579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제6기 최고인민회의는 1977년 12월 15일 1차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의장단 및 위원장을 선출하였다.

○ 최고인민회의

- 의 장 : 황장엽
- 부 의 장 : 허정숙, 홍기문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 의 장 : 황장엽
- 부 의 장 : 허정숙, 홍기문
- 사 무 장 : 전창철
- 의 원 : 황장엽, 허정숙, 홍기문, 전창철, 김영남, 정동철, 윤기복, 김관섭, 김기남, 김봉주, 지재룡, 장윤필, 김성애, 손성필, 천세봉

○ 위원회

-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 림춘추
- 예산심의위원회 위원장 : 홍시학
- 법안심의위원회 위원장 : 윤기복

제6기 최고인민회의는 1977년 12월부터 1982년 4월까지 약 4년 3개월의 임기동안 5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주요 활동내역을 보면, 1차 회의(1977.12.15-12.17)에서 관례대로 주석(김일성)·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위원들, 정무원 총리, 중앙재판소 소장,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들을 선거하고, 정무원 성원들과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하여 국가지도기관을 구성하고, 김일성의 연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에 대한 토론, 제2차7개년(1978-1984) 계획에 대한 법령 채택이 있었고, 2차 회의(1978.4.18-4.20)에서는 사회주의 노동법 채택,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김일성 교시 토론, 4차 회의(1980.4.2-4.4)에서는 인민보건법 채택이 있었다.

이 기간 중 북한은 경제건설에 역점을 두어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추진하고 사회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면서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

한 2차7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1980년 10월에 있었던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는 김정일이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권력의 전면에 공개적으로 등장하면서 비로서 공식적인 후계자로 나서기 시작하였다.<sup>96)</sup> 또한 이 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sup>97)</sup>

### (7) 제7기

1982년 2월 28일 제7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615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제7기 최고인민회의는 1982년 4월 5일 1차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의장단 및 위원장을 선출하였다.

- 최고인민회의
  - 의 장 : 양형섭
  - 부 의 장 : 손성필, 려연구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 의 장 : 양형섭
  - 부 의 장 : 손성필, 려연구
  - 사 무 장 : 김이훈
  - 의 원 : 양형섭, 손성필, 려연구, 김이훈, 정동철, 김관섭, 김기남, 리용익, 럽태준, 정두환, 리영수, 김봉주, 김성애, 김일대, 천세봉
- 위원회
  -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 림춘추
  - 법안심의위원회 위원장 : 윤기복
  - 예산심의위원회 위원장 : 김 환

제7기 최고인민회의는 1982년 4월부터 1986년 12월까지 약 4년 8개

96) 통일부, 『북한개요』, (통일부, 2000), p.66.

97) 『CD-ROM 김일성저작집』 제36권, pp.211-212.

월의 임기동안 5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주요 활동내역을 보면 1차 회의(1982.4.5)에서는 제6기와 마찬가지로 주석과 국가지도기관을 선거하였고, 3차 회의(1984.1.25-1.27)에서는 조선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할데 대한 결정 채택과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발전도상국들 간의 경제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결정 채택, 4차 회의(1985.4.9-4.11)에서는 북과 남사이에 민족적 화해와 신뢰를 도모하며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할데 대한 결정 채택, 긴장완화와 평화에로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최고인민회의와 국회사이의 회담을 제안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 채택 등이 있었다.

이 기간 중 북한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1984년 5월 김일성은 23년만에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그 동안 불편했던 대소관계를 해소하고 경제분야의 협력에 주력하였으며, 동년 9월에는 합영법을 발표함으로써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대남 관계에서는 3자회담(1984.1), 남북국회회담(1985.4), 3군사당국자회담(1986.6) 등을 제안하였으며, 1984년 9월 북한의 수재물자 제공에 대한 남한측의 수락을 계기로 남북적십자회담이 재개되어,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이 1985년 9월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 (8) 제8기

1986년 11월 2일 제8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655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제8기 최고인민회의는 1986년 12월 29일 1차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의장단 및 위원장을 선출하였다.

○ 최고인민회의

- 의 장 : 양형섭

- 부 의 장 : 손성필, 려연구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 의 장 : 양형섭
  - 부 의 장 : 손성필, 려연구
  - 사 무 장 : 김봉주
  - 의 원 : 럽태준, 정두환, 리몽호, 주창준, 최용해, 박수동,  
김성애, 김경봉, 석윤기, 류호준, 남순희
- 위원회
  -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 림춘추
  - 예산심의위원회 위원장 : 윤기복
  - 법안심사위원회 위원장 : 계응태

제8기 최고인민회의는 1986년 12월부터 1990년 5월까지 약 3년 5개월의 임기동안 5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주요 활동내역을 보면, 1차 회의(1986.12.29-12.30)에서 제7기와 마찬가지로 주석선거 등 국가지도기관을 구성하고, 김일성은 시정연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을 통하여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과업으로서 무계급사회의 실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촉진, 인민정권의 강화 등을 지적하고 남북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 2차 회의(1987.4.21 -4.23)에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물질적 토대 마련이라는 정책목표로 인민경제발전 제3차 7개년(1987-1993) 계획에 대한 토론과 법령 채택이 있었고, 4차 회의(1988.12.12)에서는 정무원 총리 리근모를 소환하고 연형묵을 정무원 총리로 선출하였다. 그 외 매년 행해지는 결산과 예산심의가 전부로 제8기 최고인민회의는 비교적 활동이 저조하였다.

### (9) 제9기

1990년 4월 22일 제9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687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제9기 최고인민회의는 1990년 5월 24일 1차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의장단 및 위원장을 선출하였다.



## 제 2 장 남·북한 의회의 성립과 변천

### ○ 최고인민회의

- 의 장 : 양형섭
- 부 의 장 : 려연구, 백인준

###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 의 장 : 양형섭
- 부 의 장 : 려연구, 백인준
- 사 무 장 : 김정봉
- 의 원 : 리계백, 정신혁, 정준기, 원봉구, 정두환,  
박수동, 류호준, 최용해, 럽태준, 김성애,  
정하철

### ○ 위원회

-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 김중린
- 예산심의위원회 위원장 : 박남기
- 법안심사위원회 위원장 : 계응태
- 외교심의위원회 위원장 : 허 담
- 통일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 윤기복

제9기 최고인민회의는 1990년 5월부터 1998년 9월까지 약 8년 3개월 동안 존속하였으나, 1994년 4월까지 7차례의 회의를 갖었을 뿐 김일성 사망(1994.7.8) 이후에는 회의를 열지 않았다.

주요 활동내역을 보면, 1차 회의(1990.5.24-5.26)에서는 관례대로 주석선거 등 국가지도기관을 구성하고, 김일성은 시정연설(「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을 통하여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노선견지,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강조, 경제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부문의 불균형 시정 및 농업증산 강조, 전민족적 대화와 남북한 자유왕래 및 전면개방을 제시하였다. 2차 회의(1991.4.11-4.13)에서는 민법과 가족법을 채택하였고, 3차 회의(1992.4.8-4.10)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

와 맺은 핵안전협정(핵무기확산 방지조약)의 비준을 승인하고, 사회주의상업법, 도시경영법, 형사소송법 수정보충을 채택하였으며, 종전헌법(1972.12.25)을 수정한 개정헌법을 채택하였다. 제5차 회의(1993.4.7-4.9)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채택, 지하자원법,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계량법 등을 채택 또는 승인,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6차 회의(1993.12.9-12.11)에서는 민족문화유산 계승발전사업 개선 강화에 대한 결정, 건설법, 토지임대법, 외국투자은행법, 세관법 등을 채택, 7차 회의(1994.4.6-4.8)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완충기과업의 성과적 수행에 대한 결정, 문화유물보호법, 변호사법, 합영법 수정보충 채택이 있었다.

제9기 최고인민회의는 2차 회의 중인 1992년 4월 9일 개정헌법을 채택하였다. 개정헌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정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개정헌법 제11조)고 규정하여 1당 지배체제를 명문화 하였고 종전헌법(1972.12.25 개정)에 있던 국방관계 조항을 떼내어 '4장 국방'을 신설하였으며, '제2장 경제'에서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강조하고(개정헌법 제19조), 외국과의 합영을 장려하고 있다(동헌법 제37조). 국가지도기관의 변화로서는 종전 중앙인민위원회의 부문별위원회이었던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독립·격상되었고(개정헌법 제111조), 종전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행정위원회'는 '행정경제위원회'로 개칭되었다(동헌법 제147조). 최고인민회의 부분에 있어서는 대의원의 임기가 종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개정헌법 제90조),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에서는 '국방위원장의 선거 또는 소환'이 추가되었으며(동헌법 제91조제7호), 의사정족수가 종전 '대의원 전원의 과반수'에서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강화되었다(동헌법 제93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문에서는 종전 상설회의 '사무장'을 '서기장'으로 개칭하고(동헌법 제100조), 상설회의 임무와 권한 중에 외국국회·국

## 제 2 장 남·북한 의회의 성립과 변천

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추가하여(동헌법 제101조제 10호) 그 활동범위를 넓게 규정하였다.

결국 1992년 4월 9일 개정헌법의 특징은 국방위원회의 부상과 경제에 있어 자력갱생의 강조, 대외경제협력의 장려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80년대 말부터 전개된 동·서독의 통일, 소련의 해체, 동유럽국가들의 사회주의 포기 등에 따른 체제불안과 경제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10) 제10기

1998년 7월 26일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687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제10기 최고인민회의는 1998년 9월 5일 1차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의장단 및 위원장을 선출하였다.

- 최고인민회의
  - 의 장 : 최태복
  - 부 의 장 : 장 철, 려원구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위 원 장 : 김영남
  - 부위원장 : 양형섭, 김영대
  - 서 기 장 : 김윤희
  - 명예부위원장 : 리종옥, 박성철, 김영주, 전문섭
  - 위 원 : 류미영, 강영섭, 리길송, 리철봉, 리일환, 승상섭, 천연옥, 럽순길, 박태화, 리광호, 태형철
- 위원회
  -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 김국태
  - 법제위원회 위원장 : 백학림
  - 예산위원회 위원장 : 한성룡

제10기 최고인민회의는 1차회의(1998.9.5)에서 개정헌법을 채택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김정일) 및 부위원장과 위원, 내각 총리(홍성남), 중앙재판소 소장 등을 선거하고, 내각 성원 및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하여 국가지도기관을 구성하였다.

이날 김정일의 시정연설은 없었으며 회의도중 제9기 1차 회의(1990.5.24)에서 행해졌던 김일성의 시정연설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를 녹음으로 청취하였다.

1998년 9월 5일 개정헌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서문을 신설하여 김일성을 ‘공화국의 창건자’,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규정하고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였으며 개정헌법을 ‘김일성 헌법’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경제부분에서는 주민의 개인부업 경리 외에 합법적인 경리 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하도록 하여 개인소유 허용범위를 확대하고(제24조), 경제관리에 있어서 독립채산제·원가·가격·수익성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제33조),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삭제(제36조),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하였다(제37조). 셋째,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서는 특허권을 보장하고(제74조), 거주·여행의 자유를 규정하였다(제75조). 넷째, 국가지도기관 부분에서는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과 권한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중전 상설회의)에 부여하였고,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 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규정하고(제100조), 국방부문 중앙기관 설치 및 폐지 권한을 신설하였다(제103조제2호). 또한 중전 ‘정무원’은 ‘내각’으로 개칭하고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 기능에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의 개념을 추가하였으며(제117조) 내각 총리를 정부대표로 규정하였다(제120조). 한편 중전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는 ‘상임위원회’로 개칭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외국사신의 신임장·소환장을 접수하고(제111조),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를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으로 구성하는 ‘상무회의’를 둘 뿐만 아니라,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12조 및 제115조). 다섯째, 지방주권기관부분에서는 ‘인민회의’의 휴회 중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가 중전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행정경제위원회’ 기능을 흡수하여 지방행정체제를 일원화하였다(제139조).

북한의 국가기관은 복잡하게 변화해 왔으나 헌법상 국가기관의 성격을 규정해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이상의 개정헌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경제활동 면에서는 자본주의 경제개념의 도입 및 제한 완화, 권력구조면에서는 국방위원회와 내각의 권한 확대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 및 위상제고라고 할 수 있다.

제10기 2차회의(1999.4.7-4.9)에서는 김일성 사후 5년만에 국가예산안('99예산총액 : 203억 8,172만원<북한 화폐단위>; '93예산총액의 절반수준)을 처리하고,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하여 계획적 관리와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시도하였고, 3차 회의(2000.4.4-4.6)에서는 1999년도 결산과 2000년 예산(총액 : 204억 532만원; 93.6억\$)을 승인하고, 교육법·대외경제중재법·민용항공법 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률을 승인하였으며, 2000년 2월 10일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 방북시 조인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였다.

〈표 2〉 북한의 헌법상 국가기관의 성격

현행헌법('98.9.5개정)		1992년 헌법		1972년 헌법		1948년 헌법	
기관	성격	기관	성격	기관	성격	기관	성격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국가대표	주석	국가수반, 국가주권 대표	주석	국가수반, 국가주권 대표		
최고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	최고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	최고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	최고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주권기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상무기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최고인민회의 상무기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주권기관
내각총리	정부대표	정무원총리		정무원총리		수상	정부의수석
내각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 전반적 국가관리기관	정무원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	정무원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	내각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
국방위원회	최고군사지도기관, 전반적 국방관리기관	국방위원회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				
		중앙인민위원회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	중앙인민위원회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		
지방인민회의	지방주권기관	지방인민회의	지방주권기관	지방인민회의	지방주권기관	지방인민위원회	지방주권기관이며 집행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인민회의 휴회 중 지방주권기관, 해당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인민회의 휴회 중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인민회의 휴회 중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	상무위원회	해당인민위원회 휴회 중 그 임무수행

### 3. 헌법상 최고인민회의의 권한·기능 변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헌법은 1948년 9월 8일 제정이래 3차례의 전문개정이 있었다.<sup>98)</sup> 이를 현행헌법(1998.9.5 개정헌법)에 규정된 최고인민회의의 관련조항의 순서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권한과 기능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최고주권기관(제87조)

최고인민회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임은 제헌이래 똑같이 규정하고 있다.

#### 입법권(제88조)

1948년 9월 8일 제정헌법은 입법권에 대하여 “오직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하도록 규정하였다. 1972년 개정헌법에서는 규정상으로는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하도록 하였으나(제73조②),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현행법령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제87조제2호), 1992년 개정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였으며(제88조), 현행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최고인민회의 임기(제90조)

1948년 제정헌법에서 대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였으나, 1954년 10월 30일 개정헌법에서는 4년으로 연장하였고,<sup>99)</sup> 1992년 개정헌법에서 5년으로 규정(제90조)한 이래 현재까지 5년으로 하고 있다.

98) 북한 헌법은 1948년 9월 8일 제정이래 1972년 12월 25일 전면개정 사이에 5차례의 부분개정이 있었다고 한다 [이계만, 「북한국가기관론」, (대영문화사, 1992), p.23.]. 그러나 앞에서 인용한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다.

99) 이계만, 앞의책, p.32.

###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제91조)

헌법에 규정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대체로 ①입법권(헌법수정, 부문법제정 또는 수정), ②국가정책의 기본원칙 수립권, ③국가지도기관조직권(국방위원회 위원장·제1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 선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명예위원장·서기장·위원 선거, 내각 총리의 선거와 부총리·위원장·상 및 그 밖의 성원들의 임명, 중앙검찰소 소장 임명, 중앙재판소 소장 선거,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위원 선거 등), ④경제계획에 대한 심의·승인권, ⑤국가예산·결산에 대한 심의·승인권, ⑥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에 대한 지도권, ⑦조약의 비준·폐기 결정권 등이다.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 가장 컸던 1948년 제정헌법에는 위 권한 외에 행정구역 신설·변경권 과 대사권(大赦權)이 있었다.

### 최고인민회의 회의(제92조)

1948년 제정헌법에서 정기회는 1년에 2차(1972년 개정헌법 이후 1-2차) 소집하고 임시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도록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최고인민회의 의사정족수(제93조)

1972년 개정헌법까지는 대의원 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였으나 1992년 개정헌법 이후로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규정하고 있다.

### 최고인민회의 의결정족수(제97조)

1948년 제정헌법에서 “법령의 채택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다수가결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1972년 개정헌법에서 법령·결정은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의 찬성, 헌법은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제98조)



부문위원회는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유사한 것으로, 1948년 제정헌법에서는 “토의할 문제를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원회를 조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72년 개정헌법에서는 “예산심의위원회, 법안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들을 조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1992년 개정헌법에서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를, 현행헌법에서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위(제106조)

1948년 제정헌법과 현행헌법에 규정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주권기관’이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였던 1972년 개정헌법과 1992년 개정헌법상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의 ‘상무기관’이었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권한(제110조)

현행헌법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임무와 권한을 분류하여 보면, ①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권한(최고인민회의 소집, 외교대표의 임명·소환, 조약의 비준·폐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의 제정 및 훈장·메달·명예칭호 수여), ②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대행권한(입법권, 경제계획·국가예산의 심의·승인,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및 그 밖의 성원들의 임면), ③헌법과 부문법의 해석권, ④국가기관들의 법령·상급기관의 결정·지시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권, ⑤국가기관 형성권(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및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사업, 상임위원회의 부문위원회의 성원 임면, 중앙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의 선거), ⑥행정조직 및 행정구역 조정권(내각의 위원회·성을 내오거나 없애는 권한,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치는 권한), ⑦대사권·특사권으로 종전 헌법상의 상설회의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고 외국사신의 신임장·소환장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제111조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 외에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되는 상무회의를 두어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결정토록 하였다(제112조 및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지시를 낼수 있고(제114조), 자기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제115조),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있다(제116조).

이상에 대한 상세한 변동사항은 다음의 <표 3> '헌법상 최고인민회의의 권한·기능 변천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 제 3 장 남 · 북한 의회제도 비교 · 분석

#### 제 1 절 국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성격

남한의 현행헌법상 국회는 입법권(제40조), 행정권(제66조④), 사법권(제101조①)의 3권 분립에 기초하고 있다. 다만, 대행정부 관계에서 보면, 행정부는 법률안제출권(제52조), 대통령령과 총리령 · 부령제정권(제75조, 제95조), 긴급명령권(제76조), 계엄선포권(제77조),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부의권(제72조), 헌법개정발의권(제128조) 등을 갖고 있어 행정부 우위형 권력분립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행 헌법상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제1조② 및 제41조①),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제40조),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국가재정에 관한 권한(제54조-제59조), 조약체결 · 비준동의권(제60조), 국정감사 · 조사권(제61조), 국무총리 · 국무위원 출석요구 · 해임건의권(제62조, 제63조), 긴급명령승인권(제76조), 계엄해제요구권(제77조) 등] 를 갖고 있다.

한편 북한은 현행헌법상 최고인민회의를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87조), 통치구조상 권력분립의 개념은 없다.

북한의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제4조②).

북한의 국가지도기관(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임되고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진다.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지도기관을 불신임(소환 또는 해임) 할 수 있지만 국가지도기관 중 어떤 기관도 최고인민회의를 해산할 수 없다.<sup>100)</sup> 국가지도기관은 최고인민회의에 의하여 조직되기 때문에 그 존립은 최고인민회의의 존립에 종속되고, 최고인민회의가 해산되

100) 다만, 헌법상 최고인민회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제90조②), 현실적으로 임기전 의회해산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의원내각제에서 말하는 의회해산과는 다른 것이다.

면 국가지도기관의 임기도 종료된다.<sup>101)</sup>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의례적인 국가원수이고(제111조②), 최고인민회의가 사법까지 장악하고 있어, 북한은 회의정부제(conventional government) 형태의 통치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최고권력의 실체가 최고인민회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모든 국가기관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제1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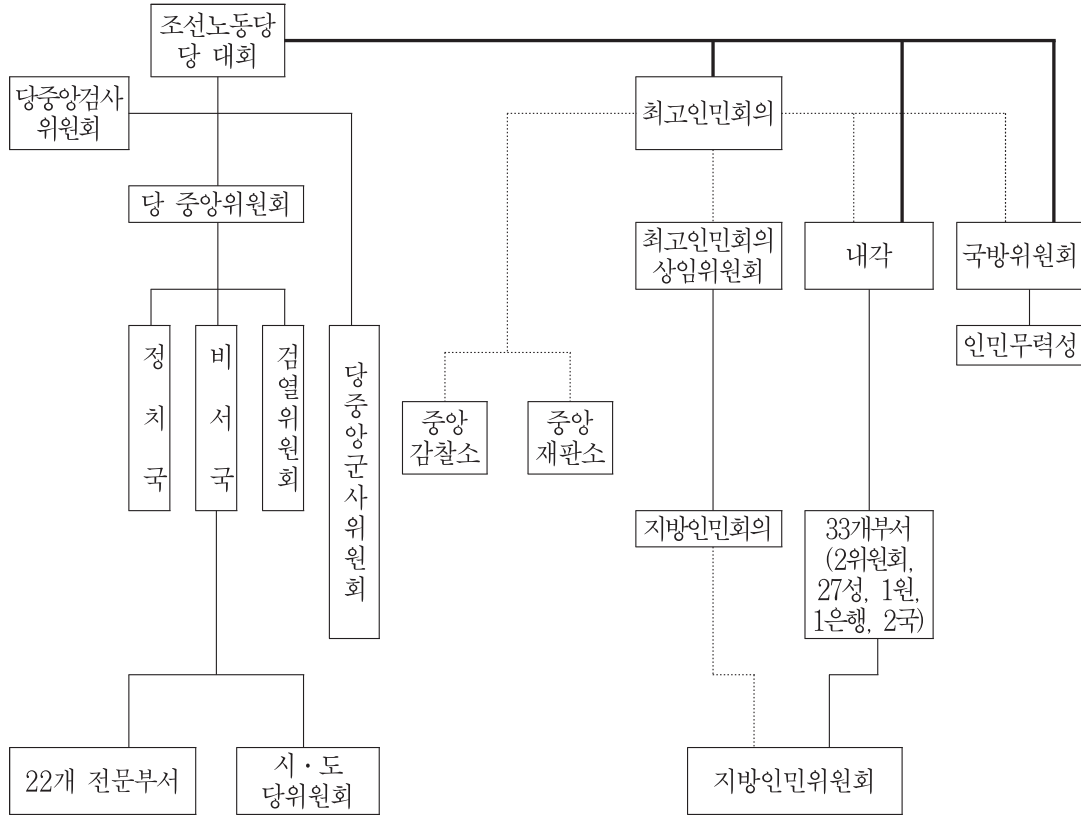
따라서 북한의 최고권력은 당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총비서: 김정일)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현행헌법상 북한의 국가기관의 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현행 헌법상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외 최고주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어 국가지도기관을 조직하고 소환한다.

---

101) 헌법상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 1〉 북한의 국가기관 체계도



※ 범례 : ( ——— ) 당의 영도  
 ( ..... ) 선출·지도·사업책임  
 ( ——— ) 지도

## 제 2 절 국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선거과정<sup>102)</sup>

남한과 북한의 선거제도는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 남한의 선거제도는 사회구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주로 자유경쟁과 선거부정을 방지하는 쪽으로 발전되어 왔고, 북한의 선거제도는 사회의 모든 성원을 하나의 집단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선거제도의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을 찾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는 국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총원과정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남한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2.16 법률 6265호, 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상의 국회의원 선거관련규정과,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1992.10.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채택, 이하 '대의원선거법'이라 한다)상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관련 규정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 1. 선거의 기본원칙

남·북한이 동일하다. 남한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헌법 제41조①)라고 규정하고 있고, 북한은 '각급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헌법 제6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

남한의 경우 선거권은 20세이상(선거법 제15조①), 피선거권은 25세이상(선거법 제16조②)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은 구분하지 아니하고 17세이상(대의원선거법 제2조②)으로 규정하고 있다.

---

102) 북한의 선거법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박상철·박정원, 「북한의 선거법제」, (한국법제연구원, 1996)을 참고.

### 3.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박탈

남한의 경우 선거권이 없는 자와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구분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는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선거법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로 하고(선거법 제18조①),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위 ㉠㉡㉢에 해당하는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선거법 제19조).

한편 북한에서는 선거권이 없는 자와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헌법 제66조③), “공민중에서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로동교화형을 받아 집행중인자, 선거권이 박탈된 자, 행위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는 선거에 참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대의원선거법 제2조⑤).

### 4. 선거구

남한의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선거하며(선거법 제20조①), 지역구 국회의원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선거법 제20조②). 국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다(선거법 제25조②).

북한의 경우 전국 선거구는 없으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는 선거하는 대의원의 수에 따라 행정구역과 인구수를 고려하여 선거때마다 조직

한다(대의원선거법 제12조).

## 5. 의원정수

남한의 경우 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의 정수는 1인이고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합하여 국회의원 정수는 273인이다(선거법 제21조).

북한의 경우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남한과 같으나(대의원선거법 제13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대의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구 상설회의)가 결정한다(대의원선거법 제7조). 현재 제10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수는 687명이다.

## 6. 선거관리위원회

남한의 경우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의 상설기구이다(헌법 제114조).

북한의 중앙 등 각급 선거위원회는 선거때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각급인민회의가 조직하는 임시기구이다(대의원선거법 제18조-제26조).

## 7. 후보자 추천

남한의 경우 후보자의 추천은 정당이나 선거권자가 할 수 있다. 정당추천은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의 규정에 따라 추천하여(선거법 제47조), 무소속후보자는 300인이상 500인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이 있어야 한다(선거법 제48조②제2호).

북한의 경우 대의원 후보자는 선거인의 직접추천 또는 정당·사회단체가 공동으로 혹은 단독으로 추천하며(대의원선거법 제35조), 추천된 대의원 후보자는 100명 이상의 '선거인회의'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당해 선거구 대의원 후보로서 등록된다(대의원선거법 제36조①). '선거인회의'는 구선거위원회가 조직하며(대의원선거법 제36조②), '선거인회의' 참가자 반수 이



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대의원선거법 제39조).

대의원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등록되는 대의원 후보자 수는 제한되지 않는다(대의원선거법 제42조).

## 8. 선거운동

남한의 경우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대단히 복잡하고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선거법 제58조-제118조).

북한의 경우 선거선전은 각급선거위원회가 조직지도하며(대의원선거법 제48조), 선거의 목적, 방법, 후보자소개와 선거에 참가할 것을 호소한다(대의원선거법 제52조). 개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은 없다.

## 9. 선거에 관한 경비

남한의 경우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수 있고(헌법 제116조②), 후보자가 부담하는 선거경비를 '선거비용'이라하여(선거법 제119조①), 수입과 지출의 범위(선거법 제120조 및 제126조), 지출총액 등을 제한하고 있다(선거법 제122조).

북한의 경우 대의원의 선거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대의원선거법 제6조②).

## 10. 투표방법

남한의 경우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기표한다(선거법 제157조④).

북한의 경우, 선거인은 대의원 후보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찬성하는 후보자 한 사람의 이름만 남기고 나머지 후보자의 이름의 중앙에 횡선을 긋고, 대의원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성하면 표식을 하지 않으며, 반대하면 이름에 횡선을 긋는다(대의원선거법 제64조).

## 11. 당선자의 확정

남한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선거법 제188조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선거법 제188조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였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을 배분한다. 다만, 유효득표 총수의 100분의 3이상 100분의 5 미만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1석씩을 배분한다(선거법 제189조①).

북한의 경우 당선자는 당해 선거구에서 투표한 선거자수의 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대의원 후보자로 하고, 투표에 참가한 선거인의 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없거나 후보자가 얻은 찬성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대의원선거법 제74조).

## 12. 재선거와 보궐선거

남한의 경우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가 없는 때, 당선인이 없는 때, 선거의 전부 무효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 선거비용 초과 지출·당선인의 선거범죄·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고(선거법 제195조), 지역구 국회의원의 궐원이 생긴때 보궐선거를 실시한다(선거법 제200조).

북한의 경우는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임기개시 전에 사망 또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며(대의원선거법 제77조), 대의원이 선거인의 신임을 잃어 소환된 경우 보충선거를 실시한다(대의원선거법 제72조).

### 13. 선거소송

남한의 경우,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인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선거법 제222조① 및 223조①).

북한의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공민은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이 대의원선거법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당해 선거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이의신청)를 제기할 수 있다(대의원선거법 제83조). 신고에 대한 당해 선거위원회의 결정에 의견이 있는 경우 신고자는 인민재판소에 문제해결을 제기할 수 있다(대의원선거법 제85조①).

## 제 3 절 국회의원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헌법상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헌법 제41조①)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과 면책특권(헌법 제45조)을 갖도록 하여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밖에 국회의원이 향유하는 권한이나 권리를 살펴보면, 국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권(헌법 제47조①), 위원회 개회요구권(국회법 제52조), 공청회 개회요구권(국회법 제64조①), 청문회 개회요구권(국회법 제65조②), 법률안제출권(헌법 제52조),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 발의권(헌법 제63조②),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권(헌법 제65조②), 헌법개정 발의권(헌법 제128

조①), 각종 의안 발의원(국회법 제79조), 발언권(국회법 제60조① 및 제99조①), 정부에 대한 질문권(국회법 제122조-제122조의3), 표결권(헌법 제49조), 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권(국회법 제128조)등 있고, 그밖에 수당과 여비를 받을 권리(국회법 제30조), 국유교통수단의 무료이용권(국회법 제31조) 등이 있다.

한편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 의무(헌법 제7조①), 겸직 금지의무(헌법 제43조), 청렴의 의무(헌법 제46조①), 국가이익 우선의 의무(헌법 제46조②), 지위남용 금지의무(헌법 제46조③)와 품위유지 의무(국회법 제25조), 모욕 등 발언 금지의무(국회법 제146조), 발언방해 등의 금지의무(국회법 제147조), 본회의·위원회 출석의무(국회법 제155조②제8호)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북한의 현행헌법은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제89조),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제4조②)라고 규정하고 있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인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제99조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 처벌 할 수 없다”(제99조②)라고 규정하고 있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권리는 헌법에는 임시회의 소집요구권(제92조③), 의안제출권(제95조②)이 규정되어 있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1948.9.9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 결정)에는 내각 및 각 성의 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의견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제출할 권리(동규정 제2조), 내각 및 각 성 또는 문화·경제기관들에 대하여 질의와 회답을 받을 권리(동규정 제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부터 대의원증 및 표장을 받을 권리(동규정 제4조), 국영교통기관을 무임승차(선)할 수 있는 권리(동규정 제5조)가 규

정되어 있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의무로는, 헌법에는 선거자들과의 밀접한 연계와 자기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지도록 하여(헌법 제7조 ①), 신임을 잃은 경우 선거자들이 소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헌법 제7조 ②),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에는 선거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자기사업의 보고의무(동규정 제6조), 지방인민위원회가 법령·내각의 결정·지시를 집행하는데 방조할 의무(동규정 제7조), 최고인민회의 출석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부터 맡은 모든 과업을 성실히 실행할 의무(동규정 제8조), 헌법·법령·정령 및 내각의 중대한 결정·지시를 숙지할 의무(동규정 제9조)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헌법 제42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헌법 제90조①).

## 제 4 절 국회와 최고인민회의 권한·기능

### 1. 입법에 관한 권한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에는 법률제정권(헌법 제40조), 헌법개정안 의결권(헌법 제130조),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헌법 제60조), 국회규칙제정권(헌법제64조①)이 있다.

북한의 경우 입법에 관하여는 이원화되어 있다. 북한헌법은 최고인민회의가 입법권을 행사하되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8조).

그러나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2차만 소집되고 회의 일수도 1-4일 정도여서 실제적인 입법권의 행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하고 있다.

헌법상 최고인민회의의 입법에 관한 권한은 헌법의 수정보충(제91조제1호), 부문법의 제정 또는 수정보충(제91조제2호),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의 승인(제91조제3호),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폐기의 결정(제91조제17호) 등이 있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낼 수 있도록 하

여(헌법 제114조), 규칙제정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재정에 관한 권한

국회의 경우 재정에 관한 권한으로는 예산안 심의 확정권(헌법 제54조 ①), 계속비에 대한 의결(헌법 제55조①), 예비비의 설치 및 지출승인(헌법 제55조②),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확정권(헌법 제56조), 국채모집 및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사전 의결권(헌법 제58조) 등이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심의·승인권(헌법 제91조제14호),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심의·승인권(헌법 제91조제15호)이 있다.

## 3. 국가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국회의 국가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으로는,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대통령 결선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헌법 제67조②), 국무총리 임명동의권(헌법 제86조①), 감사원장 임명동의권(헌법 제98조②), 대법원장·대법관 임명동의권(헌법 제104조①,②),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권(헌법 제111조④),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권(헌법 제111조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선출권(헌법 제114조②)이 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①국방위원회 위원장·제1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의 선거, ②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명예부위원장·서기장·위원들의 선거, ③내각 총리의 선거와 부총리·위원장·상·그 밖의 성원들의 임명, ④중앙검찰소 소장의 임명, ⑤중앙재판소 소장의 선거, ⑥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의 선거를 통하여 국가기관을 조직한다(헌법 제91조제5호-제13호).

한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상·그밖에 내각 성원을 임명 또는 해임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중앙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헌법 제110조제11호-제13호).

#### 4.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국회의 경우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으로는 국방·외교정책에 대한 동의권(헌법 제60조), 국정감사·조사권(헌법 제61조),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국회출석 요구 및 질문권(헌법 제62조),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헌법 제63조), 탄핵소추의결권(헌법 제65조),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권(헌법 제76조③),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⑤),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헌법 제79조②) 등이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가 선거하거나 임명한 국가지도기관(국방위원회 위원장 및 그 성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그 성원, 내각 총리 및 내각 성원, 중앙검찰소장, 중앙재판소장,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및 그 성원)의 소환 또는 해임을 통하여 국정을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헌법 제91조 제5호-제13호). 내각,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125조, 제152조, 제162조).

#### 5. 자율권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헌법 제64조①),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할 수 있다(헌법 제64조②).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매기 제1차 회의에서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의 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헌법 제96조).

규칙제정권에 관하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규칙제정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6. 기타 최고인민회의의 권한·기능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격

앞서 열거한 것 외에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는 권한(헌법 제91조제4호)과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우는 권한(헌법 제91조제16호)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통치체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시키고 이를 조직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고인민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이 벌이는 토론(발언)내용을 보면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의사 표시는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정책에 대한 지지, 사업성과의 선전, 참여강조, 충성다짐 등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결국은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긴밀한 연락을 갖고 정기적으로 선거자들 앞에서 자기사업을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당의 정책을 그대로 일반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헌법에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 최고주권기관이라고 규정하여(헌법 제106조), 최고인민회의의 상무기관처럼 보이거나 실제로는 그 이상의 권한을 갖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하며,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권한으로는 첫째, 최고인민회의와 관련하여, ①최고인민회의의 소집권, ②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 새로운 부문법안·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보충안에 대한 심의·채택권, ③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 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의 심의·승인권, ④최고인민회의와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사업권, ⑤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의 사업권, ⑥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권이 있고, 둘째,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으로 ①조약의 비준·폐기권, ②외교대표의 임명·소환권, ③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의 제정과 훈장, 메달, 명예칭호의 수여권



이 있으며, 셋째,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으로 ①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 성원들을 임명·해임권, ②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의 임명·해임권, ③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의 선거 또는 소환권, ④내각의 위원회와 성을 내오거나 없애는 권한, ⑤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치는 권한이 있고, 넷째, 국가기관을 감독하는 권한으로 ①헌법과 현행 부문법 규정의 해석권, ②국가기관들의 법준수 집행의 감독 및 대책수립권, ③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 국방위원회의 결정·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하거나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키는 권한이 있으며 기타 권한으로 대사권(大赦權)·특사권(特赦權)을 가지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최고인민회의와 관련된 것 이외에는 거의 모두가 통상 국가원수가 행하는 권한과 유사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외국 사신의 신임장·소환장을 접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헌법 제111조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상무기관일 뿐 아니라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되는 ‘상무회의’가 있으며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헌법 제112조 및 제113조).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헌법 제114조).

## 제 5 절 국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 제도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할 목적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국회의 경우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하고 있지만(국회법 제35조), 소위원회(국회법 제57조), 연석회의(국회법 제63조), 전원위원회(국회법 제63조의2)도 위원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일정한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말하며, 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재정경제·통일외교통상·국방·행정자치·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문화관광·농림해양수산·산업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건설교통·정보위원회 등 16개가 있다(국회법 제37조①).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하여져 있고, 상임위원회 위원은 각 교섭단체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하며(국회법 제48조①),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국회법 제41조②). 의원은 2개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며,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국회법 제39조).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단, 정보위원회 위원은 의원의 임기동안)이다.

국회의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이 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설치하는 한시적인 기구이다(국회법 제44조).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는 상설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국회법 제45조-46조의2).

북한의 경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헌법 제98조), 이는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해당한다.

제10기 최고인민회의에 설치된 부문위원회는 법제위원회와 예산위원회로 각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있다.

한편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는 대의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기 1차 회의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국회의 특별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도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는 선거로 구성하며, 그 종류가 적고(현행 3개), 구성원도 적다(위원장포함 7인, 국회의 경우 12인-25인)는 특징이 있다.

## 제 4 장 결 론 : 남북관계의 전망과 의회의 역할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공동선언에서 통일에 관하여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밝힘으로써, 남북 정상은 통일문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의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남한의 연합제안은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전대통령이 제147회 정기국회 제1차 회의 특별연설에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함으로서 공식화하였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첫째, 자주, 평화, 민주를 원칙으로 둘째,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에서 남과 북이 연합하여 공존하면서 단일민족사회를 형성한 다음, 완전한 하나의 민족국가를 세워 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남북연합단계에서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남북수뇌가 만나는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쌍방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며, 쌍방정부의 10인 이내 각료급 대표로 구성되는 「남북각료회의」를 두어 그 아래 정치·외교·경제·군사·사회·문화·인도 등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쌍방동수의 100명 이내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설치하며, 남북각료회의와 남북평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기구인 「공동사무처」를 비무장지대(평화구역, 평화시)에 설치함과 아울러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를 파견하여 연락업무를 하도록 하고, 통일의 중간단계를 지나 통일의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 초안을 마련하여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를 거쳐 통일헌법을 확정·공포한 다음, 이 헌법에 따라 남·북한 전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다.<sup>103)</sup>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전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으로 약간의

103) 통일부, 「통일부 30년사」, (통일부, 1999), pp.68-71.

변화(‘화해·협력단계’를 남북연합의 전단계로 설정)가 있었으나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현 정부에서도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삼고 있다.<sup>104)</sup>

한편 북한은 1960년 8월 15일 김일성이 ‘8·15해방 15돐 경축대회’에서 “당분간 남북조선의 현재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남북조선의 연방제를 실시하자는 제의를 하였다. 김일성은 이러한 연방제를 실시하면 남북의 접촉과 협상을 보장하고 상호이해와 협조를 가능하게 하며, 상호간 불신임도 없앨 수 있으므로 그때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면 조국의 완전한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05)</sup>

이 연방제안은 1973년 6월 23일 발표된 김일성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5대방침’에서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국호에 의한 연방제로 변화하였는데 그 내용은 “현조건에서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하고 민족적 단결을 이룩한데 기초하여 북과 남에 현존하는 두 제도를 당분간 그대로 놔두고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라는 것이다.<sup>106)</sup>

이 주장은 종전의 남·북한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라는 기구 대신에 군중집회 형태인 ‘대민족회의’를 상정함으로써, 남한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1980년 10월 10일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일성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

104) 1999년 10월 26일 국회본회의에서 임동원 통일부장관은 조순승의원이 질의한 현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하여 “우리의 통일정책은 1980년대말 국회공청회등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마련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현 정부에서도 이를 계승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국회본회의회의록』제208회(1999.10.26), p.36.).

105) 『CD-ROM 김일성저작집』 제14권, pp.243-244.

106) 『CD-ROM 김일성저작집』 제28권, p.401.

밑에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남북이 통일할 것을 주장하면서, 연방형식의 통일 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하였다.<sup>107)</sup>

이 연방제 방안은 종래의 연방제와 비교하여 볼 때 그 동안 ‘당분간’이라는 통일의 중간과정의 단계적 조치를 배제시킴으로써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완성형 통일국가로 상정하고 있다.

1991년 1월 1일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개 제도, 두개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어느 일방도 자기의 것을 양보하려하지 않는 조건에서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은 비현실적인 것이며 언제 실현되겠는지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종래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하였다.<sup>108)</sup>

이는 종래의 완성형 연방제 통일방안에서 잠정적·단계적인 연방제 통일방안으로 선회한 것인데,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북한측이 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바로 이 연방제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현실을 감안한 단계적 점진적인 통일방안이고, 중간단계에서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며, 선 민족통합 후 제도통일, 그리고 남북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성이 있다. 남북정상은 이점을 인정하고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남북간의 통일논의는 이러한 인식 위에서 전개될 것이며,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남북관계는 급진전되고 있다. 9월말 현재 3차

107) 「CD-ROM 김일성저작집」 제35권, p.347.

108) 「CD-ROM 김일성저작집」 제43권, pp.12-13.

에 걸쳐 진행된 장관급회담과 국방장관회담, 경협실무접촉, 적십자회담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6·15 선언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장관급회담의 내용을 보면 주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문제와 남·북경제 협력문제에 국한되고 있다.

2000년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있었던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조성태 국방부장관과 김일철 인민무력성부장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의 위험 제거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주로 경의선 철도연결과 문산-개성간 도로건설에 서로 협력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위와 같이 남북간의 각종회담은 아직은 서로 만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선에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남측은 남북경협과 연계하여 올해 말까지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서신교환·면회소설치 등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과거의 북측의 행태로 볼 때, 손쉽게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특히, 북한의 체제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대남혁명전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당면한 경제적 난관을 해결하는데 적절히 남한을 이용할 목적으로 남북대화에 임하고 있다면, 남북장관급회담이 정례화 된 다하더라도 한동안 군사적 대치완화·평화정착 문제 등의 의제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남북관계는 접촉 및 부분적 교류단계로 보고 이의 반복을 통하여 교류의 확대 및 상호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 의회간 대화도 필요하다. 남북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남북교류의 법적 제도화,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입법조치 그리고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토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긍정적인 통일헌법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차근차근 논의하여 남·북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도 있다.

남북관계는 의외성과 돌발성이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가 언제 또다시 경색될지 모르는 반면에 연내로 예정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방문과 내년 봄으로 예상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성사되면 남북관계는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북대화에 관한 한 절대 서두르거나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당장은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남북간의 빈번한 접촉은 상호신뢰를 확보하고 북한의 체질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든 분야에서 남·북한간의 유사성을 늘려 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통일준비 방법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전사」제24권~제32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국토통일원 편,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제 I 집~제IV집, 국토통일원, 1988.
-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 국회사무처, 2000.
- 국회의원총람발간위원회, 「대한민국의정총람」, 헌정요람편찬회, 1994.
- 김광웅 외, 「한국의 의회정치」, 박영사, 1991.
- 김철수, 「헌법학 개론」, 박영사, 1997.
- 김홍대, 「지방자치입법론」, 박영사, 1999.
- 대한민국국회, 「대한민국국회50년사」, 대한민국국회, 1998.
- 민족통일연구원, 「통일환경과 남북한관계 : 1998~1999」, 민족통일연구원, 1998.
- 박상철 외, 「북한의 선거법제」, 한국법제연구원, 1996
- 박영호,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방향」, 민족통일연구원, 1998.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동아출판사, 1994.
- 양성철, 「북한정치연구」, 박영사, 1995.
- 이계만, 「북한국가기관론」, 대영문화사, 1992.
- 통일교육원, 「북한문제이해」, 통일교육원, 1999.
-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민간통일운동의 진로」, 통일문제연구협의회, 1999.



- 통일부, 「북한개요」, 통일부, 2000.  
\_\_\_\_\_, 「통일백서」, 통일부, 2000.  
\_\_\_\_\_, 「통일부30년사」, 통일부, 1999.  
통일연구원 편, 「CD-ROM 김일성저작집」, 동방미디어, 2000.  
홍성방, 「헌법Ⅱ」, 현암사, 200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5.

### 〈논 문〉

- 김성윤, “한국의 통일정책의 회고와 전망”, 「통일연구논집」,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1997.  
김학준, “분단의 배경과 고정화 과정”,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91.  
배한동,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통일논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97.  
손희두, “미군정의 대한정책과 의회제도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3.  
안성호, “남과 북 정치통합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제1호, 북한연구학회, 1999.  
장명봉, “최근의 북한사회주의 헌법 개정('98. 9. 5)의 분석”, 「통일연구논총」제7권제2호, 민족통일연구원, 1998.  
전현준, “김정일 정권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통일연구논총」 제7권제2호, 민족통일연구원, 1998.  
진덕규, “미군정의 정치사적 인식”,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91.

〈표 1〉 헌법상 국회의 권한·기능 변천표

구 분	현행헌법 (87.10.29 전문)	제8차개정헌법 (80.10.27 전문)	제7차개정헌법 (72.12.27 전문)	제6차개정헌법 (69.10.21)
입법권	제40조 임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76조 임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75조 임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右同>
국회의 구성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며,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7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며,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6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 및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하는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150인이 상 250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국회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6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150인이상 200인 이하의 범위에서 법률로 정한다. ③국회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의원의 임기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78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77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기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右同>

제5차개정헌법 (62.12.26 전문)	제35조 임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3차개정헌법 (60.6.15)	<右同>	제2차개정헌법 (54.11.29)	<右同>	제1차개정헌법 (52.7.7)	제31조 임법권은 국회에 행한다. ②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한다.	제정헌법 (48.7.17)
제36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150인이상 200인 이하의 범위에서 법률로 정한다. ③국회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양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②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③국민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33조 ①민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민의원이 해선된 때에는 그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제33조 ①민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민의원이 해선된 때에는 그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제33조 ①민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민의원이 해선된 때에는 그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제33조 ①민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민의원이 해선된 때에는 그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제33조 ①민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민의원이 해선된 때에는 그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제33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구 분	현행헌법 (87.10.29 전문)	제8차개정헌법 (80.10.27 전문)	제7차개정헌법 (72.12.27 전문)	제6차개정헌법 (69.10.21)
의원의 검칙 제한	<b>제43조</b>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b>제79조</b>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b>제78조</b>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b>제39조</b>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의원의 불채포 특권	<b>제44조</b> ①국회의원은 현행법 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법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b>제80조</b> ①국회 의원은 현행 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법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b>제79조</b> ①국회 의원은 현행 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법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右同>
의원의 면책투권	<b>제45조</b>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b>제81조</b>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b>제80조</b>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右同>

제5차개정헌법 (62.12.26 전문)	제3차개정헌법 (60.6.15) ②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2분의 1을 개신한다.	제2차개정헌법 (54.11.29)	제1차개정헌법 (52.7.7)	제정헌법 (48.7.17)
<b>제39조</b> 국회의원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의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右同>	<右同>	<右同>	<b>제48조</b>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b>제41조</b> 국회의원은 현행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법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右同>	<右同>	<b>제49조</b> 국회의원은 현행법을 제외한 외에는 회기중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그 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b>제49조</b> 국회의원은 현행법을 제외한 외에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그 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b>제42조</b>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의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右同>	<右同>	<右同>	<b>제50조</b> 국회의원은 국회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구 분	현행헌법 (87.10.29 전문)	제8차개정헌법 (80.10.27 전문)	제7차개정헌법 (72.12.27 전문)	제6차개정헌법 (69.10.21)
의원의 특권남용 금지	<b>제46조</b>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넘어서서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b>제82조</b>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넘어서서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b>제81조</b> 국회의원은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右同>
정기회· 임시회	<b>제47조</b>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의정원은 대통령의 명을 받고 임명되므로 국회의 임시의정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b>제83조</b>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의정원은 대통령의 명을 받고 임명되므로 국회의 임시의정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b>제82조</b>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의정원은 대통령의 명을 받고 임명되므로 국회의 임시의정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右同>

제5차개정헌법 (62.12.26 전문)	제3차개정헌법 (60.6.15)	제2차개정헌법 (54.11.29)	제1차개정헌법 (52.7.7)	제정헌법 (48.7.17)
<b>제40조</b>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법률이 정하는 기업체와의 계약 또는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右同>	<右同>	<右同>	
<b>제43조</b>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된다. ②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국회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③정기회의 회기는 12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	<右同>	<b>제34조</b> ①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회한다.	<右同>	<b>제34조</b> ①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12월 20일에 집회한다. ②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b>제35조</b> ①임시회의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국회의장 또는 국회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2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

구 분	현행헌법 (87.10.29 전문)	제8차개정헌법 (80.10.27 전문)	제7차개정헌법 (72.12.27 전문)	제6차개정헌법 (69.10.21)
		없다. ③국회는 정 기회·임시회 를 합하여 년 150일을 초과 하여 개최할 수 없다. 다. 대통령이 집회를 요구 한 임시회의 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④대통령이 임시회의 집 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 과 집회요구 의 이유를 명 시하여야 한 다. ⑤대통령의 요구에 의하 여 집회된 임 시회에 서는 정부가 제출 한 의안에 한 하여 처리하 며, 국회는 대 통령이 집회 요구시에 정 한 기간에 한 하여 개최한 다.	없다. ③국회는 정 기회·임시회 를 합하여 년 150일을 초과 하여 개최할 수 없다. 다. 대통령이 집회를 요구 한 임시회의 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④대통령이 임시회의 집 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 과 집회요구 의 이유를 명 시하여야 한 다. ⑤대통령의 요구에 의하 여 집회된 임 시회에 서는 정부가 제출 한 의안에 한 하여 처리하 며, 국회는 대 통령이 집회 요구시에 정 한 기간에 한 하여 개최한 다.	
의장, 부의장 선 출권	<b>제48조</b> 국회는 의장 1인과 부 의장 2인을 선출한다.	<b>제84조</b> 국회는 의장1인과 부 의장2인을 선 출한다.	<b>제83조</b> 국회는 의장1인과 부 의장2인을 선 출한다.	<右同>

제5차개정헌법 (62.12.26 전문)	제3차개정헌법 (60.6.15)	제2차개정헌법 (54.11.29)	제1차개정헌법 (52.7.7)	제정헌법 (48.7.17)
할 수 없다.			원의 의장은 국 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 다.	②국회 폐회중에 대통령 또는 부 통령의 선거를 발 행할 사유가 발 생할 때에는 국 회는 지체 없이 단연히 집회한 다.
<b>제44조</b> 국회는 의장1인과 부 의장2인을 선 출한다.	<b>제36조</b> ①민의 원은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②참의원은 의 장 1인, 부의장 1인을 선거한다.	<右同>	<b>제36조</b> ①민의원 은 의장 1인 부 의장 2인을 선 출한다. ②참의원은 부 통령을 의장으 로 하고 부의장	<b>제36조</b> 국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구 분	현행헌법 (87.10.29 전문)	제8차개정헌법 (80.10.27 전문)	제7차개정헌법 (72.12.27 전문)	제6차개정헌법 (69.10.21)
의결정족수 와 의결방법	<b>제49조</b> 국회의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b>제85조</b> 국회의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b>제84조</b> 국회의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右同>
의사공개의 원칙	<b>제50조</b>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b>제86조</b>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b>제85조</b>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右同>

제5차개정헌법 (62.12.26 전문)	제3차개정헌법 (60.6.15)	제2차개정헌법 (54.11.29)	제1차개정헌법 (52.7.7)	제정헌법 (48.7.17)
	③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2인을 선거한다. ③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b>제45조</b> 국회의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b>제37조</b> ①각원은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b>제37조</b> ①각원은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b>제37조</b> ①각원은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b>제37조</b> ①국회의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b>제46조</b>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b>제38조</b>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각원의 의결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右同>	<b>제38조</b>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각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b>제38조</b>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구 분	현행헌법 (87.10.29 전문)	제8차개정헌법 (80.10.27 전문)	제7차개정헌법 (72.12.27 전문)	제6차개정헌법 (69.10.21)
회계계의속의 원칙	<b>제51조</b>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제87조</b>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b>제86조</b>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右同>
법률안 제출권	<b>제52조</b>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b>제88조</b>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b>제87조</b>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右同>
법률의 공포	<b>제53조</b>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규범에 좇아 그 제의를 환부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재의를 확정할 수 있다. ⑤국회의 폐회중에도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⑥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⑦국회의 폐회중에도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⑧국회의 폐회중에도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b>제89조</b>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규범에 좇아 그 제의를 환부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재의를 확정할 수 있다. ⑤국회의 폐회중에도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⑥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b>제88조</b>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규범에 좇아 그 제의를 환부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재의를 확정할 수 있다. ⑤국회의 폐회중에도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⑥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右同>

제5차개정헌법 (62.12.26 전문)	제3차개정헌법 (60.6.15)	제2차개정헌법 (54.11.29)	제1차개정헌법 (52.7.7)	제정헌법 (48.7.17)
<b>제47조</b>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b>제39조</b> ①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④ 생략	<b>제39조</b> ①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④ 생략	<b>제39조</b> ①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④ 생략	<b>제39조</b>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b>제48조</b>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④ 생략	<b>제39조</b> ①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④ 생략	<b>제39조</b> ①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④ 생략	<b>제39조</b> ①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④ 생략	<b>제40조</b>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재의를 확정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국회의 폐회중에도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b>제49조</b>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규범에 좇아 그 제의를 환부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국회의 폐회중에도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b>제40조</b>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재의를 확정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국회의 폐회중에도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b>제40조</b>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재의를 확정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국회의 폐회중에도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b>제40조</b>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재의를 확정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국회의 폐회중에도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b>제40조</b>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재의를 확정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국회의 폐회중에도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구 분	<p>현행헌법 (87.10.29 전문)</p> <p>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제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p> <p>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하여 법률이 공포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에 의하여 공포한다.</p> <p>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p>	<p>제8차개정헌법 (80.10.27 전문)</p> <p>③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하여 법률이 공포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에 의하여 공포한다.</p>	<p>제7차개정헌법 (72.12.27 전문)</p> <p>③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하여 법률이 공포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에 의하여 공포한다.</p>	<p>제6차개정헌법 (69.10.21)</p> <p>&lt;右同&gt;</p>
-----	---	---	---	---

제5차개정헌법 (62.12.26 전문)	제3차개정헌법 (60.6.15)	제2차개정헌법 (54.11.29)	제1차개정헌법 (52.7.7)	제정헌법 (48.7.17)
<p>물안을 수정할 수 없다.</p> <p>④제회의 요구는 국회는 재회의 불이행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p> <p>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안에 공포나 제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p> <p>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4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공포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에 의하여 공포한다.</p>	<p>물안을 수정할 수 없다.</p> <p>④제회의 요구는 국회는 재회의 불이행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p> <p>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안에 공포나 제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p> <p>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4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공포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에 의하여 공포한다.</p>	<p>물안을 수정할 수 없다.</p> <p>④제회의 요구는 국회는 재회의 불이행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p> <p>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안에 공포나 제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p> <p>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4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공포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에 의하여 공포한다.</p>	<p>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p> <p>③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p> <p>④제회의 요구는 국회는 재회의 불이행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p> <p>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안에 공포나 제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p> <p>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4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공포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에 의하여 공포한다.</p>	<p>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법률안은 정부로 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환부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률로써 확정된다.</p> <p>②대통령은 본조 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p> <p>③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p>



구 분	현행헌법 (87.10.29 전문)	제8차개정헌법 (80.10.27 전문)	제7차개정헌법 (72.12.27 전문)	제6차개정헌법 (69.10.21)
예산안의 심의·확정권	<p><b>제54조</b>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p> <p>②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p> <p>③세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다음 예산안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p> <p>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p> <p>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p> <p>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p>	<p>제4장에 의한 개정 법률이 공포된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공포한다.</p> <p>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p>	<p>제4항에 의한 개정 법률이 공포된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공포한다.</p> <p>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p>	<右同>
예산안의 심의·확정권	<p><b>제54조</b>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p> <p>②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p> <p>③세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다음 예산안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p> <p>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p> <p>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p> <p>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p>	<p>제4장에 의한 개정 법률이 공포된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공포한다.</p> <p>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p>	<p>제4항에 의한 개정 법률이 공포된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공포한다.</p> <p>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p>	<右同>

제5차개정헌법 (62.12.26 전문)	제3차개정헌법 (60.6.15)	제2차개정헌법 (54.11.29)	제1차개정헌법 (52.7.7)	제정헌법 (48.7.17)
<p>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p>	<右同>	<右同>	<右同>	<p><b>제41조</b>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p> <p><b>제91조</b> ①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중지출을 회계년도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에 회계초에 의결하여야 한다.</p> <p><b>제94조</b> ①국회는 회계년도가 개시되기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p> <p>②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p>
<p><b>제50조</b>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p> <p>②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p> <p>③전항의 기간 안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세입의 경비내에 예</p>	<右同>	<右同>	<右同>	<右同>
<p><b>제50조</b>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p> <p>②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p> <p>③전항의 기간 안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세입의 경비내에 예</p>	<右同>	<右同>	<右同>	<右同>

구 분	현행헌법 (87.10.29 전문)	제8차개정헌법 (80.10.27 전문)	제7차개정헌법 (72.12.27 전문)	제6차개정헌법 (69.10.21)
		국회에서 의결될 때 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회의의 목적을 위한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회의의 범위 안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 경비 2.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3. 이미 예산승인된 계속비	<右同>

제5차개정헌법 (62.12.26 전문)	제3차개정헌법 (60.6.15)	제2차개정헌법 (54.11.29)	제1차개정헌법 (52.7.7)	제정헌법 (48.7.17)
의 범위안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 경비 2.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3. 이미 예산승인된 계속비	산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준하여 세입의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봉급과 사무처리 경비 2.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3. 이미 예산승인된 계속비			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에는 1개월 이내에 가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구 분	현행헌법 (87.10.29 전문)	제8차개정헌법 (80.10.27 전문)	제7차개정헌법 (72.12.27 전문)	제6차개정헌법 (69.10.21)
계속비 예비비	<b>제55조</b>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b>제91조</b>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b>제90조</b>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조과지출에 대하여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右同>
추가경정 예산안	<b>제56조</b>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b>제92조</b> 정부는 변경을 가할 때에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b>제91조</b>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변경을 가할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右同>
지출예산 증액과 비목설치 지	<b>제57조</b>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b>제93조</b>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각항의 예산 금액을 증가	<b>제92조</b>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각항의 예산 금액을 증가	<右同>

제5차개정헌법 (62.12.26 전문)	제3차개정헌법 (60.6.15)	제2차개정헌법 (54.11.29)	제1차개정헌법 (52.7.7)	제정헌법 (48.7.17)
<b>제51조</b>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조과지출에 대하여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右同>	<右同>	<右同>	<b>제91조</b> ①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b>제93조</b> 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조과지출에 대하여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b>제52조</b>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右同>	<右同>	<右同>	<b>제91조</b> ③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각항의 예산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
<b>제53조</b>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각항의 예산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	<右同>	<右同>	<右同>	<右同>

구 분	현행헌법 (87.10.29 전문)	제8차개정헌법 (80.10.27 전문)	제7차개정헌법 (72.12.27 전문)	제6차개정헌법 (69.10.21)
국제모집· 국고채무부 담계약의 의결권	제58조 국제를 모집하거나 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때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4조 국제를 모집하거나 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때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3조 국제를 모집하거나 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때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右同>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95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94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右同>
조약체결 · 비준과 선전포고 의 동의권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 통상통상협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외국군대의 파견 또는 외국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96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 통상통상협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외국군대의 파견 또는 외국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95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제조약, 통상조약, 어업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외국군대의 지원 또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선전포고, 국군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지원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右同>

제5차개정헌법 (62.12.26 전문)	제3차개정헌법 (60.6.15)	제2차개정헌법 (54.11.29)	제1차개정헌법 (52.7.7)	제정헌법 (48.7.17)
을 설치할 수 없다.	<右同>	<右同>	<右同>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5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右同>	<右同>	<右同>	제92조 국제를 모집하거나 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때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제조약, 통상조약, 어업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외국군대의 지원 또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선전포고, 국군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지원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右同>	<右同>	<右同>	제42조 국회는 국제조약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구 분	현행헌법 (87.10.29 전문)	제8차개정헌법 (80.10.27 전문)	제7차개정헌법 (72.12.27 전문)	제6차개정헌법 (69.10.21)
국정감사· 조사권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헌정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7조 국회는 국정에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에 지점 관련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진행 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	제97조 국회는 국정에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에 지점 관련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진행 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	<右同>
국무총리 · 국무위원 의 출 석 요구권	제62조 ①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98조 ①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 ①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右同>

제5차개정헌법 (62.12.26 전문)	제3차개정헌법 (60.6.15)	제2차개정헌법 (54.11.29)	제1차개정헌법 (52.7.7)	제정헌법 (48.7.17)
주유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	<右同>	<右同>	<右同>	<右同>
제57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과 집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	<右同>	<右同>	<右同>	제49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정부위원 또는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그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제44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변하여야 한다.	제44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변하여야 한다.	<右同>	제44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변하여야 한다.

구 분	현행헌법 (87.10.29 전문)	제8차개정헌법 (80.10.27 전문)	제7차개정헌법 (72.12.27 전문)	제6차개정헌법 (69.10.21)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의 제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99조 ①국회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결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은 국무총리 임명후 1년 이내에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해임의결은 국회의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97조 ①국회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의결은 국회의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제2항의 결의는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右同>

제5차개정헌법 (62.12.26 전문)	제3차개정헌법 (60.6.15)	제2차개정헌법 (54.11.29)	제1차개정헌법 (52.7.7)	제정헌법 (48.7.17)
하여야 한다.	제71조 ①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한 국무위원의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민의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민의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민의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민의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의2 ①민의원에서 국무위원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국무위원은 즉시 사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불신임결의는 그 발의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0조의2 ①민의원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국무위원은 즉시 사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불신임결의는 그 발의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구 분	현행헌법 (87.10.29 전문)	제8차개정헌법 (80.10.27 전문)	제7차개정헌법 (72.12.27 전문)	제6차개정헌법 (69.10.21)
국회의 자율권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의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제100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제98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右同>

제5차개정헌법 (62.12.26 전문)	제3차개정헌법 (60.6.15)	제2차개정헌법 (54.11.29)	제1차개정헌법 (52.7.7)	제정헌법 (48.7.17)
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은 발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한다. 이 시기에 표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불신임결의안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국무원은 국무총리가 권위되거나 민의원의 총선거 후 취임으로 임명된 때에는 총선거 후에는 총사직하여야 한다. ⑥제1항과 진항의 경우에 국무총리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집행한다.	<右同>	<右同>	제45조 ①각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격을 제정하고 의원의 정범을 결정할 수 있다. ②의원을 제명함에는 각원의 찬성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5조 ①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격을 제정하고 의원의 정범을 결정할 수 있다. ②의원을 제명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구 분	현행헌법 (87.10.29 전문)	제8차개정헌법 (80.10.27 전문)	제7차개정헌법 (72.12.27 전문)	제6차개정헌법 (69.10.21)
탄핵소추권	제65조 ①대통령 · 국무총리 · 장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101조 ①대통령 · 국무총리 · 장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위원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99조 ①대통령 · 국무총리 · 장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위원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61조 ①대통령 · 국무총리 · 장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2차개정헌법 (54.11.29)	제3차개정헌법 (60.6.15)	제5차개정헌법 (62.12.26 전문)	제4차개정헌법 (52.7.7)	제정헌법 (48.7.17)



구 분	현행헌법 (87.10.29 전문)	제8차개정헌법 (80.10.27 전문)	제7차개정헌법 (72.12.27 전문)	제6차개정헌법 (69.10.21)
		<p>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과 국회의원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p> <p>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p> <p>④ 탄핵결정은 공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 면제되는 아니다.</p>	<p>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과 국회의원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p> <p>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p> <p>④ 탄핵결정은 공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 면제되는 아니다.</p>	<p>탄핵소추는 국회의원의 50인 이상의 발의와 제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p> <p>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p> <p><b>제62조</b> &lt;右同&gt;</p>
의원의 자격상실				

제5차개정헌법 (62.12.26 전문)	제3차개정헌법 (60.6.15)	제2차개정헌법 (54.11.29)	제1차개정헌법 (52.7.7)	제정헌법 (48.7.17)	
<p>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p> <p><b>제62조</b> ①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심판위원회를 둔다.</p> <p>② 탄핵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의원을 하고, 대법원장이나 국회의원과 3인 이상의 위원이 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에는 국회의원과 5인 이상의 위원이 된다.</p> <p>③ 탄핵결정은 공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 면제되는 아니다.</p> <p>⑤ 탄핵심판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p> <p><b>제38조</b> 국회의원은 임기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p>	<p>추의 결의를 받은 자는 탄핵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p> <p>② 탄핵판결은 공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단, 이에 의하여 민사상의 책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p>	<右同>	<p>①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p> <p>②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인 5인 이상의 위원이 된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p> <p>③ 탄핵판결은 심판관 3분지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p> <p>④ 탄핵판결은 공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단,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p>	<p><b>제47조</b> ①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p> <p>②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인 5인 이상의 위원이 된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p> <p>③ 탄핵판결은 심판관 3분지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p> <p>④ 탄핵판결은 공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단,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p>	<p><b>제47조</b> ①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p> <p>②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인 5인 이상의 위원이 된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p> <p>③ 탄핵판결은 심판관 3분지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p> <p>④ 탄핵판결은 공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단,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p>

구 분	현행헌법 (87.10.29 전문)	제8차개정헌법 (80.10.27 전문)	제7차개정헌법 (72.12.27 전문)	제6차개정헌법 (69.10.21)
국회의 해산		<b>제57조</b> ①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위헌행위를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장의 직무명령을 내리거나 국회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b>제59조</b> ①대통령은 국회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②생략	
대통령의 선거권	<b>제67조</b>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후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는 대통령을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후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 다만, 대통령	<b>제39조</b>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후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 다만, 대통령	<b>제39조</b>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 다만, 대통령	<右同>

제5차개정헌법 (62.12.26 전문)	제3차개정헌법 (60.6.15)	제2차개정헌법 (54.11.29)	제1차개정헌법 (52.7.17)	제정헌법 (48.7.17)
소속경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합당 또는 재명으로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b>제55조의2</b> ①민원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20일 이후 30일 이내에 민원의원의원의 충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국무총리는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b>제53조</b>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 다만, 대통령	<b>제53조</b>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 다만, 대통령	<b>제53조</b>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 다만, 대통령

구 분	현행헌법 (87.10.29 전문) 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 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⑤생략	제8차개정헌법 (80.10.27 전문)	제7차개정헌법 (72.12.27 전문) ②③생략	제6차개정헌법 (69.10.21)
긴급조치의 승인권	<b>제76조</b> ①대통령은 내우·외 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 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 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 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수없을 때에 한하여 최 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 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인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 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 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b>제51조</b> ①대통령은 중 대한 재정·경제상의 위 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 전을 교전상태에 이 른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 를 기다릴 수없을 때에 한하여 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한 명 령을 발할 수 있다.	<b>제53조</b> ①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 대한 재정·경제상의 위 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 전을 교전상태에 이 른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 를 기다릴 수없을 때에 한하여 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한 명 령을 발할 수 있다.	<右同>

제5차개정헌법 (62.12.26 전문) 이 결위된 경우 에 잔임기간이 2년에 미만이 때에는 국회에 서 선거한다.  제65조 ①국민이 대통령을 선거 하는 경우에 최 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 원 과반수가 출 석한 공개회의 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 자로 한다. ②생략	제3차개정헌법 (60.6.15) 당선된다. ②③생략	제2차개정헌법 (54.11.29) ②~⑦생략	제1차개정헌법 (52.7.7) ②~⑦생략	제정헌법 (48.7.17)
<b>제73조</b> ①내우·지 환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 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 고 국회의 집회 를 기다릴 여 유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 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 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발할 수 있다. ②국가의 안위 에 관계되는 중	<b>제57조</b> ①내우, 외환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공공의 안녕질 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 고 국회의 집회 를 기다릴 여 유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 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 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발할 수 있다. ②전항의 안위 에 관계되는 중	<b>제57조</b> ①내우, 외환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공공의 안녕질 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 고 국회의 집회 를 기다릴 여 유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 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 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발할 수 있다. ②전항의 안위 에 관계되는 중	<右同>	<b>제57조</b> ①내우, 외환, 천재, 지 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공공의 안녕질 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은 최상의 처 분을 하거나 이에 관한 명 령을 발할 수 있다. ②지방의 명령 또는 처분을 지 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구 분	<p>현행헌법 (87.10.29 전문)</p> <p>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칙분 또는 명령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p> <p>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p>	<p>제8차개정헌법 (80.10.27 전문)</p> <p>요한 비장할 수 있다.</p> <p>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 고 인정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할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제1항과 제2항의 조치는 대통령에게 없이 국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p> <p>④제1항과 제2항의 조치는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최단기간내에 개정되어야 하고, 그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p>	<p>제7차개정헌법 (72.12.27 전문)</p> <p>할 수 있다.</p> <p>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 고 인정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할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제1항과 제2항의 조치는 대통령에게 없이 국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p> <p>④제1항과 제2항의 조치는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최단기간내에 개정되어야 하고, 그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p>	<p>제6차개정헌법 (69.10.21)</p>
-----	---	--	---	---------------------------

<p>제5차개정헌법 (62.12.26 전문)</p> <p>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p> <p>③제1항과 제2항의 명령 또는 칙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칙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 명령에 의하여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p> <p>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이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p>	<p>제3차개정헌법 (60.6.15)</p> <p>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 있다.</p> <p>제58조 ①제57조의 칙분이나 명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승인은 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칙분이나 명령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p>	<p>제2차개정헌법 (54.11.29)</p>	<p>제1차개정헌법 (52.7.7)</p>	<p>제정헌법 (48.7.17)</p> <p>언어야 한다.</p> <p>③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p>
--	--	---------------------------	-------------------------	---

구 분	현행헌법 (87.10.29 전문)	제8차개정헌법 (80.10.27 전문)	제7차개정헌법 (72.12.27 전문)	제6차개정헌법 (69.10.21)
계엄의 해제요구권	제77조 ①~③생략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의 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2조 ①~③생략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의 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4조 ①~③생략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의 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右同>
일반사면권	제79조 ②일반사면을 명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4조 ②일반사면을 명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6조 ②일반사면을 명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右同>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62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63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右同>

제5차개정헌법 (62.12.26 전문)	제3차개정헌법 (60.6.15)	제2차개정헌법 (54.11.29)	제1차개정헌법 (52.7.7)	제정헌법 (48.7.17)
제75조 ①~③생략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의 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64조 ①대통령은 국무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②③생략	<右同>	<右同>	제64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제77조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右同>	<右同>	<右同>	제63조 ②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4조 ①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총리 위원은 대통령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69조 ①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서생략>	<右同>	<右同>	제69조 ①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구 분	현행헌법 (87.10.29 전문)	제8차개정헌법 (80.10.27 전문)	제7차개정헌법 (72.12.27 전문)	제6차개정헌법 (69.10.21)
간사원장 임명동의 권	<b>제98조</b>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b>제73조</b>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b>제72조</b>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右同>
대법원장 임명동의 권	<b>제104조</b>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b>제105조</b>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b>제103조</b>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右同>
헌법재판관 수재판관 (헌법위원 회 신출권· 헌법재판 수장인명 동의권	<b>제111조</b>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b>제112조</b> ②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헌법위원회는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b>제109조</b> ②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헌법위원회 위원중에서	

제5차개정헌법 (62.12.26 전문)	제3차개정헌법 (60.6.15)	제2차개정헌법 (54.11.29)	제1차개정헌법 (52.7.7)	제정헌법 (48.7.17)
<b>제93조</b>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b>제78조</b> ①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있는 자로써 조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통령은 법관추진회의 제청이 있으면 임명할 수 있다.	<右同>	<右同>	
<b>제99조</b>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통령은 법관추진회의 제청이 있으면 임명할 수 있다.	<b>제78조</b> ①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있는 자로써 조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통령은 법관추진회의 제청이 있으면 임명할 수 있다.	<右同>	<右同>	<b>제78조</b>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b>제83조의4</b> ①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은 9인으로 구성한다. ②심판관은 대통령·대법원·참의원이 각 3인씩 선임한다.	<右同>	<b>제81조</b> ③헌법위원회를 위임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 민의원의원 3인과 참의원의원 2인으로 구성한다.	<b>제81조</b> ③헌법위원회를 위임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 민의원의원 5인과 참의원의원 5인으로 구성한다.

구 분	현행헌법 (87.10.29 전문)	제8차개정헌법 (80.10.27 전문)	제7차개정헌법 (72.12.27 전문)	제6차개정헌법 (69.10.21)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권	<b>제114조</b> ②중앙선거관리위원 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의 위 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b>제115조</b> ②중 앙선거관리위 원회는 대통 령이 임명하 는 3인, 국회 에서 선출하 는 3인과 대 법원장이 지 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위원 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하 는 자를 임명 한다.	<b>제112조</b> ②중 앙선거관리위 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 통령이 임명하 는 3인, 대통 령이 임명한 다. ③제2항의 위 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 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 장이 지명하 는 자를 임명 한다.	<右同>
기타 공무 원의 임명 에 대한 인준권				
헌법개정 제안권	<b>제128조</b> ①헌법개정은 국회재 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의 발의로 제안된다.	<b>제129조</b> ①헌 법개정은 대 통령 또는 국 회재적의원 과 반	<b>제124조</b> ①헌 법개정은 대 통령 또는 국 회재적의원 과 반	<右同>

제5차개정헌법 (62.12.26 전문)	제3차개정헌법 (60.6.15)	제2차개정헌법 (54.11.29)	제1차개정헌법 (52.7.7)	제정헌법 (48.7.17)
<b>제107조</b> ②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는 대통령이 임 명하는 2인, 국 회에서 선출하 는 2인과 대법 원판사회의에서 선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 선한다.	<b>제75조의2</b> ①선 거관리를 공정 하게 하기 위하 여 중앙선거위 원회를 둔다. 중 앙선거위원회는 대법관중에서 3인과 3인과의 정당에서 추천 한 6인의 위원 으로 조직하고 위원장은 대법 관인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	<b>제42조의2</b> ①관 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 원장, 대사, 공 사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 에 대한 인준권 을 가진다. ②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중에 전항의 공무원 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지정된 참의원 에서 그 사후인 준을 얻어야 한 다.	<b>제98조</b> ①헌법개 정의 제안은 대 통령, 민의원 제적의원 3분지 1	<b>제98조</b> ①헌법개 정의 제안은 대 통령, 민의원 제적의원 3분지 1
<b>제119조</b> ①헌법 개정의 제안은 국회의 재적의 원 3분의 1이상	<右同>	<b>제98조</b> ①헌법개 정의 제안은 대 통령, 민의원 또 는 참의원의 재 적의원 3분지 1	<b>제98조</b> ①헌법개 정의 제안은 대 통령, 민의원 제적의원 3분지 1	<b>제98조</b> ①헌법개 정의 제안은 대 통령, 민의원 제적의원 3분지 1

구 분	현행헌법 (87.10.29 전문)	제8차개정헌법 (80.10.27 전문)	제7차개정헌법 (72.12.27 전문)	제6차개정헌법 (69.10.21)
헌법개정안의 의결권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右同>
헌법개정안	제131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을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24조 ②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며, 국회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은 국회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25조 ②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右同>

제5차개정헌법 (62.12.26 전문)	제3차개정헌법 (60.6.15)	제2차개정헌법 (54.11.29)	제1차개정헌법 (52.7.7)	제정헌법 (48.7.17)
또는 국회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右同>	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민의원 3분의 2 이상 50만 인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이상 또는 참의원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지 1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20조 ①국회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右同>	<右同>	제98조 ④헌법개정안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98조 ④헌법개정안의 의결은 국회의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21조 ①헌법개정안은 국회의결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右同>	<右同>	<右同>	<右同>



〈표 3〉 헌법상 최고인민회의의 권한·기능 변천표

구 분	1998. 9. 5 개정 김일성 헌법	1992. 4. 9 개정 사회주의 헌법
최고주권 기관	<b>제87조</b>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b>제87조</b> ①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입법권	<b>제88조</b> ①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한다. ②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b>제88조</b> 입법권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가 행사한다.
최고구성	<b>제89조</b>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b>제89조</b>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인민회의의 임기	<b>제90조</b> ①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②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③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b>제90조</b> ①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②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③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권한	<b>제91조</b>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	<b>제91조</b>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및 법령을 채택 또는 수정한다. 2.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의 의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총리를 선거 및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8. 중앙재관소 소장을 선거 및 소환하며 중

구 분	1972. 12. 25 개정 사회주의 헌법	1948. 9. 8 제정 인민민주주의 헌법
최고주권 기관	<b>제73조</b> ①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b>제32조</b>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입법권	<b>제73조</b> ②입법권은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b>제33조</b> 입법권은 오직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최고구성	<b>제74조</b>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b>제34조</b>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인민회의의 임기	<b>제75조</b> ①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③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b>제36조</b>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b>제46조</b> ①최고인민회의는 비상한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사태가 계속될 때까지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초과하여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최고인민회의는 이 경우에 있어서 임기 전에 그 해산을 결정할 수도 있다.
권한	<b>제76조</b>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및 법령을 채택 또는 수정한다. 2.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 및 소환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의 의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총리를 선거 및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8. 중앙재관소 소장을 선거 및 소환하며 중	<b>제37조</b> ①최고인민회의는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에 부여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②다음의 권한은 최고인민회의에만 속한다. 1. 헌법의 승인 또는 수정 2. 국내·국외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3.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의 선거 4. 내각의 조직 5. 법령의 채택 및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주요한 법령의 승인 6. 인민경제계획의 승인 7. 국가예산의 승인 8. 도·시·군·리(읍 및 노동자구역)의 신설 및 변경

구 분	1988. 9. 5 개정 김일성 헌법	1992. 4. 9 개정 사회주의 헌법
최 고 인 민 회 의	<p>한다.</p> <p>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p> <p>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p> <p>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p> <p>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p> <p>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p> <p>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p> <p>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p> <p>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p> <p>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p> <p>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p>	<p>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p> <p>9.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p> <p>1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p> <p>11. 최고인민회의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p> <p>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p> <p>13.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p> <p>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p> <p>15.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밖의 정무원성원들을 임명한다.</p> <p>16.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p> <p>17.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p> <p>18. 필요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의 조 직한 중앙국가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p> <p>19.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p> <p>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p>
장기회·임시회	<p><b>제92조</b> ①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p> <p>②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p> <p>③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p>	<p><b>제92조</b> ①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p> <p>②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소집한다.</p> <p>③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p>

1972. 12. 25 개정 사회주의 헌법	1948. 9. 8 개정 인민민주주의 헌법
<p>암검찰소 소장을 임명 및 해임한다.</p> <p>9.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p> <p>10. 국가예산을 승인한다.</p> <p>11.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p>	<p>9. 대사권(大赦權)의 행사</p> <p>10. 최고재판소의 선거</p> <p>11. 검사총장의 임명</p>
<p><b>제77조</b> ①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p> <p>②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소집한다.</p> <p>③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p>	<p><b>제38조</b> ①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가진다.</p> <p>②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소집한다.</p> <p>③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한다.</p> <p>④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p>

구 분	1988. 9. 5 개정 김일성 헌법	1992. 4. 9 개정 사회주의 헌법
의사정족수	<b>제93조</b>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b>제93조</b>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의장·부의장	<b>제94조</b> ①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②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b>제94조</b> ①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②의장은 회의를 집행하며 대의원 계에서 최고인민회의를 대표한다. ③부의장은 의장의 사무를 돕는다.
최고인민회의	<b>제95조</b> ①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②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b>제95조</b> ①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과 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들이 제출한다. ②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자격심사	<b>제96조</b> 최고인민회의의 매기 제1차 회의는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 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b>제96조</b>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는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의 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의결정족수	<b>제97조</b> ①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②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가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③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b>제97조</b> ①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②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가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③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된다.
부분위원회	<b>제98조</b> ①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②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③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사무를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④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b>제98조</b> ①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 같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②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들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③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의 사무를 도와 국가의 정책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④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의

1972. 12. 25 개정 사회주의 헌법	1948. 9. 8 개정 인민민주주의 헌법
<b>제78조</b>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반수가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b>제40조</b> ①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그 회의를 열 수 있다.
<b>제79조</b> ①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②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b>제39조</b> ①최고인민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에 의하여 회의를 지도한다.
<b>제80조</b> ①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및 정무원이 제출한다. ②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b>제81조</b>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는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의 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b>제82조</b> ①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가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②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 또는 수정된다.	<b>제40조</b> ② 법령의 채택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다수가결로 한다.
<b>제83조</b> ①최고인민회의는 예산심의위원회, 법안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들을 조직할 수 있다. ②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의 사무를 돕는다.	<b>제42조</b> ① 최고인민회의는 토의할 문제를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②이 위원회는 주권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감열할 수 있다.
	<b>제43조</b>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초안을 작성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안에 법제위원회를 조직한다.

구 분	1988. 9. 5 개정 김일성 헌법의 상임위원회의 지도원에 사업한다.	1992. 4. 9 개정 사회주의 헌법 상설회의의 지도원에 사업한다.
최고인민회의	<p><b>제99조</b> ①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p> <p>②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현행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승인이 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p> <p><b>제106조</b>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최고주권기관이다.</p> <p><b>제107조</b>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p> <p><b>제108조</b> ①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약한 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p> <p>②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가운데서 오랜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 수 있다.</p>	<p><b>제99조</b> ①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p> <p>②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의 승인이 없이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p> <p><b>제87조</b> ②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의 무기관은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의이다.</p> <p><b>제100조</b> ①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p> <p>②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p>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p><b>제109조</b> ①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p> <p>②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임무를 계속 수행한다.</p>	<p><b>제100조</b> ③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p> <p><b>제103조</b>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p>
상설회의의	<p><b>제110조</b>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소집한다.</li> <li>2.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 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 채택하며, 채택 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li> </ol>	<p><b>제49조</b>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에 제기된 법안을 심의 결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li> <li>2.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에 현행 법령을 수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li> <li>3. 현행 법령을 해석한다.</li> <li>4.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 수상의 제의에</li> </ol>

1972. 12. 25 개정 사회주의 헌법	1948. 9. 8 개정 인민민주주의 헌법
<p><b>제84조</b> ①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p> <p>②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의 승인이 없이 체포할 수 없다.</p> <p><b>제85조</b>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의 상무기관이다.</p> <p><b>제86조</b> ①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p> <p>②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p>	<p><b>제44조</b> ①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p> <p>②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이 없이 또는 그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현행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p> <p><b>제47조</b>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주권기관이다.</p> <p><b>제48조</b>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서기장 및 위원 17명으로 구성한다.</p> <p><b>제51조</b> 최고인민회의를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새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p> <p><b>제49조</b>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고인민회의의 소집</li> <li>2. 헌법 및 법령의 실시에 대한 감독, 현행 법령의 해석 및 법령의 공포</li> <li>3. 헌법 및 법령에 저촉되는 내각의 결정·지시의 폐지</li> <li>4. 최고인민회의의가 채택한 법령의 공포</li> <li>5. 특사권의 행사</li> <li>6.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 수상의 제의에</li> </ol>
<p><b>제87조</b>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에 제기된 법안을 심의 결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li> <li>2.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에 현행 법령을 수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li> <li>3. 현행 법령을 해석한다.</li> <li>4.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 수상의 제의에</li> </ol>	<p><b>제49조</b>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고인민회의의 소집</li> <li>2. 헌법 및 법령의 실시에 대한 감독, 현행 법령의 해석 및 법령의 공포</li> <li>3. 헌법 및 법령에 저촉되는 내각의 결정·지시의 폐지</li> <li>4. 최고인민회의의가 채택한 법령의 공포</li> <li>5. 특사권의 행사</li> <li>6.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 수상의 제의에</li> </ol>

구 분	1988. 9. 5 개정 김일성 헌법	1992. 4. 9 개정 사회주의 헌법
최 고 인 민 회 의 상 임 위 원 회 < 상 설 회 의 >	<p>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달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p> <p>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p> <p>5. 국가기관들의 범준수 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p> <p>6. 헌법, 최고인민회의의 법령·결정, 국방위원회의 결정·명령,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p> <p>7.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p> <p>8.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p> <p>9.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p> <p>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p> <p>11.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p> <p>12.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p> <p>1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p> <p>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p> <p>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p> <p>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p>	<p>3. 현행법령을 해석한다.</p> <p>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p> <p>5.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p> <p>6.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p> <p>7. 최고인민회의의 위원회들과의 사업을 한다.</p> <p>8.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p> <p>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p> <p>10.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p>

1972. 12. 25 개정 사회주의 헌법	1948. 9. 8 개정 인민민주주의 헌법
<p>5.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실시한다.</p> <p>6.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p> <p>7.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과의 사업을 한다.</p> <p>8.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p> <p>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p>	<p>의한 상의 임명 및 이에 대한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의 요구</p> <p>7. 훈장 또는 명예칭호의 수여</p> <p>8. 외국과의 조약의 비준 및 폐기</p> <p>9.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사의 임명 및 소환</p> <p>10. 외국사신의 신임장 및 해임장의 접수</p>

구 분	1988. 9. 5 개정 김일성 헌법	1992. 4. 9 개정 사회주의 헌법
최 고 인 민 회 의 상 임 위 원 회 의 상 설 회 의 성 부 회 의	17.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b>제111조</b> 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②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b>제112조</b> 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②전원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b>제113조</b> 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②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b>제114조</b>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결정·지시 명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b>제102조</b>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b>제115조</b>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사업을 돕는 부분위원회를 둘 수 있다.		
<b>제116조</b>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b>제104조</b>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기 타		

1972. 12. 25 개정 사회주의 헌법	1948. 9. 8 개정 인민민주주의 헌법
<b>제88조</b>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b>제50조</b>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상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다.
	<b>제35조</b>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인구 5만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b>제41조</b>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은 5일 이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서기장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b>제45조</b> ①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그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②최고인민회의가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새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